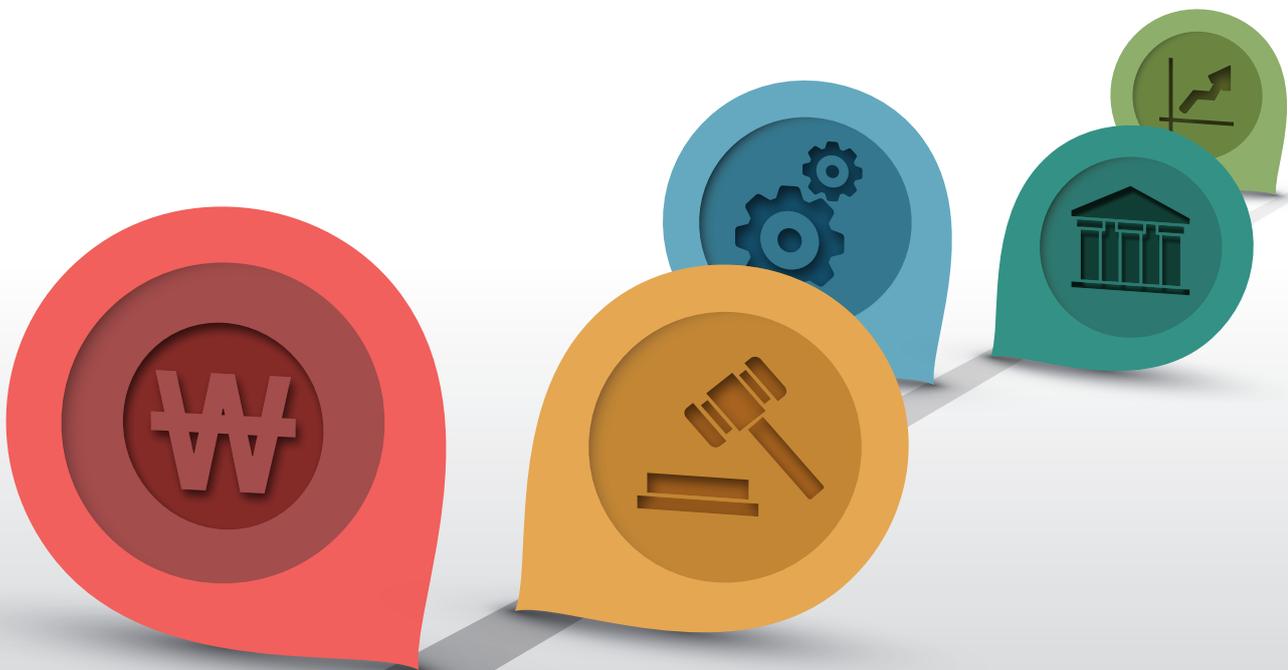


| 조세정책 토론회 |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6.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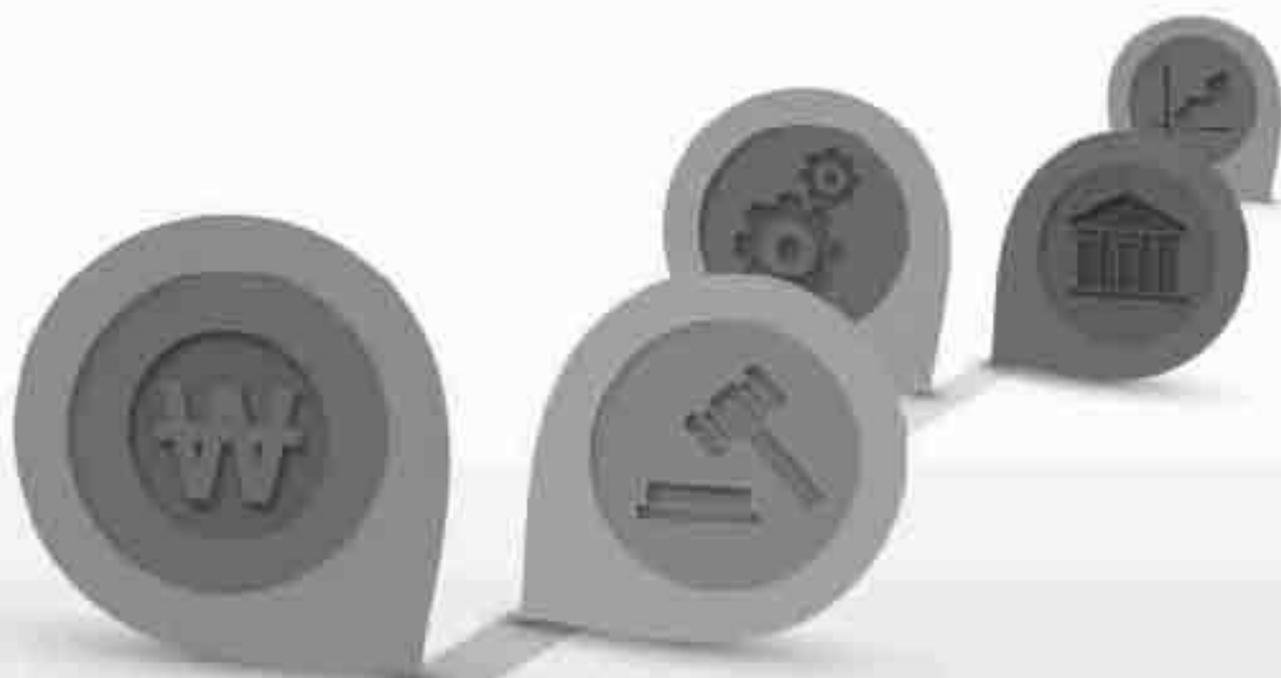


| 조세정책 토론회 |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6. 11





◎ 일시: 2016. 10. 17(월) 14:00~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축사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발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사회 **윤성식**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토론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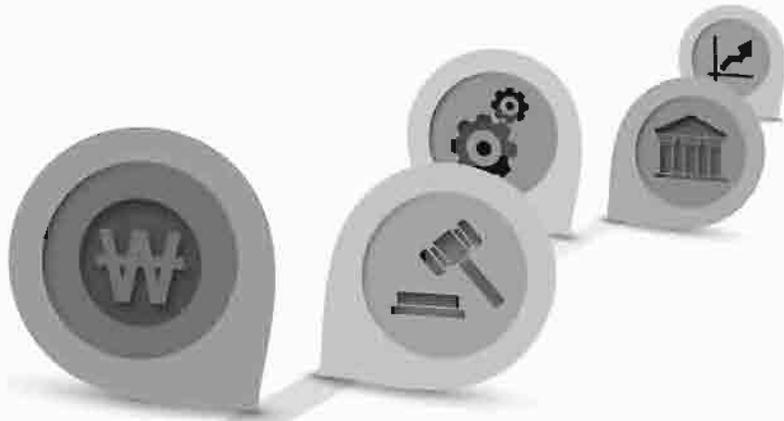
토론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토론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조세정책 토론회 |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 행사일정

#### 개회식

개회사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세균** | 국회의장

축사 **조경태** | 기획재정부 장관

**최병호** | 한국재정학회 회장

#### 진행

사회 **윤성식** | 고려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토론 **이현재** |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현** |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유찬** | 홍익대학교 교수





| 조세정책 토론회 |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 목 차

■ <b>개회사</b>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1
■ <b>격려사</b>	정세균   국회의장	5
■ <b>축사</b>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10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12
■ <b>발제</b>		
□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7
□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31
■ <b>토론</b>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51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7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73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75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93
■ <b>회의록</b>		109
■ <b>언론보도 모음</b>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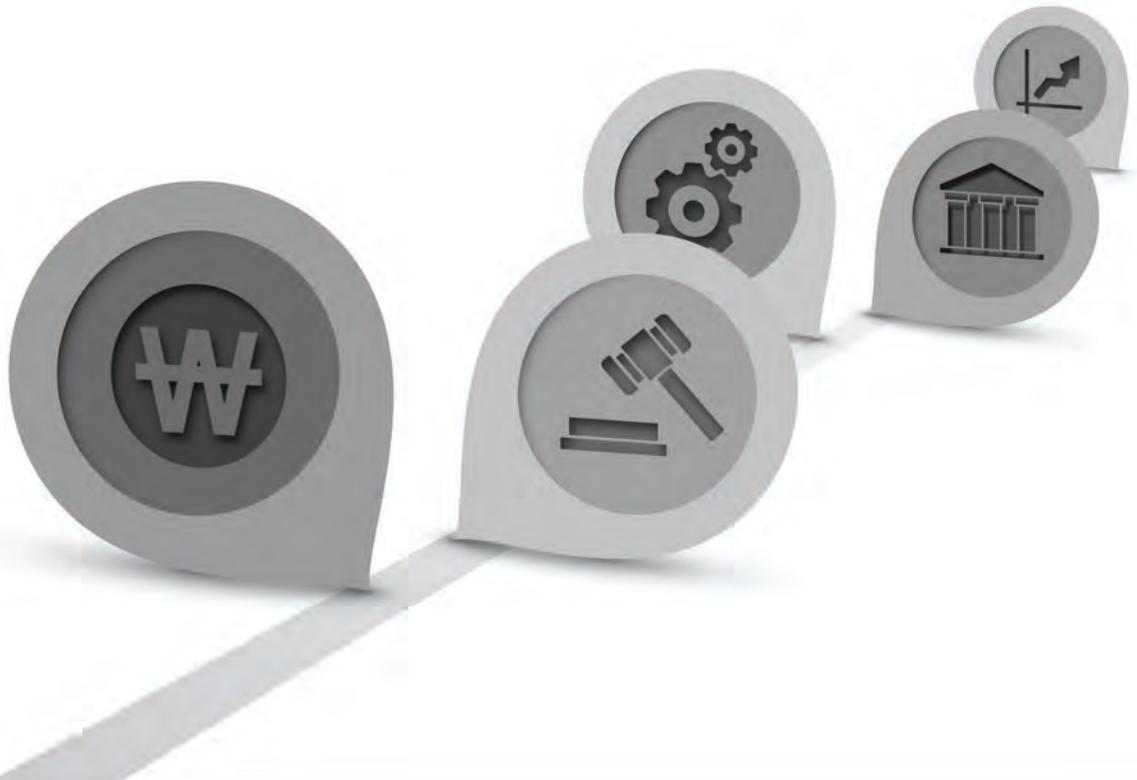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개 회 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광  
은 의원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윤성식 교수님,

한국재정학회를 대표해서 축하말씀 주신 최병호 회장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우철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박용주 국  
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 보좌진, 학계, 관  
련기관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소득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래 우리경제는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  
이 쉽사리 견히지 않는 이러한 때에, 조세 정책이 가지는 역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매년 경제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16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각 개정안이 정책목표 달성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조달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었는지 등 세부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관점의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논의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원님들과 여러 조세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을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곳에 함께 자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7.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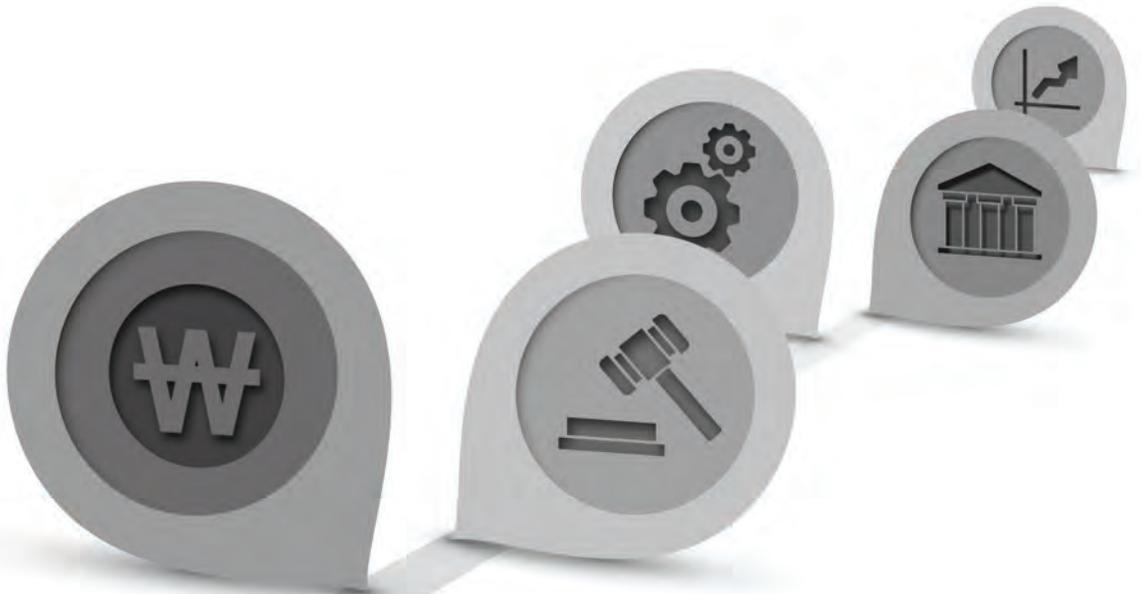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격 려 사

정세균

국회의장



## 격려사

국회는 이제 내년도 국가의 예산심사와 더불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아주 핵심적인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예산안 심사가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세입 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법 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면서 견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조세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해운 및 조선업 등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수경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저성장 기조가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걱정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지방재정 소요 역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복지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지 우려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증세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입의 기반이 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조세정책 전략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의 기본은 올바른 과세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 되도록 과세기반은 더욱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제개편은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간 조세 관련 법률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방대한 양의 세법개정안을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이 중 쟁점이 되는 법률안에 대해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어서 2016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이 타당한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재정과 조세 분야의 전문가이신 의원님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올바른 조세정책 방향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국회방송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7.

국회의장 정세균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축 사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 축사1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지혜와 식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 소위원회 위원이신 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 성장률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수요에 출당할 수 있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오늘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을 활발히 발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들이 각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모두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관점과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7.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조 경 태**

## 축사2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학회 회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세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를 맡아주신 윤성식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국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말에 발표한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실현 등 조세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세법개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제약 하에서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안이 조세정책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며,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세법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세법개정에 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지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세입확충에 대한 요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문제는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둘째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세원을 확



충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비과세·감면을 축소 정비한다는 정부 세제정책의 방향성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여건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과 정부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절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의견과 쟁점이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됨으로써 금년도 세법개정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적절한 시점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7.

한국재정학회 회장 **최병호**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발제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1

##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회예산정책처  
( '16.10.17 )

##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 목차

- I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 II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 I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비 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정책방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금년도 개정안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추진

<b>경제활력제고</b>	<b>민생 안정</b>	<b>공평 과세</b>	<b>조세제도 합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성장동력 확충</li> <li>•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li> <li>• 투자·수출·소비 활성화</li> <li>• 기업구조조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 중산층 지원</li> <li>•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li> <li>• 농어민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반 확충</li> <li>• 역외세원 확보</li> <li>•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 권익보호</li> <li>• 납세편의 제고</li> <li>• 세제 합리화</li> </ul>

### 경제활력 제고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 산업 세제지원 강화

- R&D 세액공제 확대 :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 \* 11대 신산업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자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 시설투자 지원 신설 : 중소기업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10%(중견기업 8%, 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기술취득 세액공제 확대

- 중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 시 세액공제(5%) 신설 중소기업이 기술취득시 공제율 인상(7%→10%)

친환경 차량 구매 인센티브

-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400만원 한도**
- 전기자동차 대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소득세, 법인세의 30%**

###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 세제지원 대상 네거티브 전환

- 대상제도: 고용·투자·R&D 관련 16개 세제지원 제도
- 대상업종: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공제 확대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
-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액 확대(1~2억원 → 2~4억원)**

####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에 대해 현행 감면한도 산정방법 이외에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행사가격 한도: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 설비투자 촉진 지원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1년 연장('17.6월말까지)**

#### 수출기업 지원

-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수출비중 50% 이상)으로 확대(현행 적용대상: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이상 중소기업)**
- \*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구입시 **시내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구매액 인상(1회 구매액 200만원 → 500만원 이하)**

#### 기업구조조정 지원

- 해운업계의 애로를 감안해 **해운기업의 통세\* 적용 포기를 한시 허용**
- \*해운기업은 일반 법인세 대신 선박톤수·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 산출하는 법인세(통세) 납부방식 선택 가능
-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
- 예) 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 완화(80%→70%)

## 민생안정

### 서민, 중산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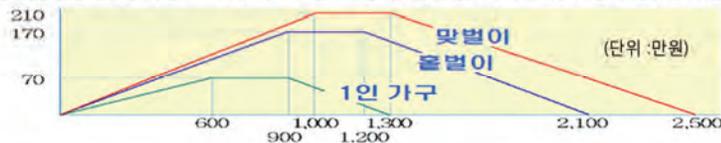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위해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총급여액	현행	개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 ('19.1월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0~210만원→77~230만원)**
-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사업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 서민, 중산층 지원

#### 출산·육아 지원 확대

-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50만원, 셋째 30→70만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50→100%)

#### 교육비 부담 경감

- ‘든든자금’ 상환액, 초·중·고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적용**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주거비 경감

-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10%→12%)**하고 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적용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특례 2년간 연장**

###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2년 연장  
 \* 공제대상 매입액 범위: 매출액의 30~50% → 35~60%
- 폐자원,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간 2년 연장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년 연장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 공제율 1~2%, 다만 '16년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 적용

#### 중소기업 지원

- **접대비 한도 특례**(연간 기본한도: 1,800만원→**2,400만원**)를 2년 연장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3년 연장, **현행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

####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현행: 150㎡ 이내)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하여 귀농·귀촌 지원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5억원 한도)에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비과세**
-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시 **세계자원 확대**(5년간 운영비의 20% → 7년간 운영비의 30% 세액공제)

### 공평과세

####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대상인 **상장법인대주주 범위 확대**(\*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코넥스)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현행유지)

#### 현금거래업종 과표양성화

- 중고차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액의 일정율(예: 10%)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추가(52 → 55개 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급의무(미발급시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축소

-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3년간 특례를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고려 **적용세율 인상(17→19%)**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종합과세(6~38%) 대신 17% 특례세율 선택 가능

## 공평과세

### 국외전출세 도입

- **역의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 \* 국내 거주자(대주주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 (투자·임금증가·배당 1:1:1 → 1:1.5:0.8)
  -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과세(세율 10%)
- 「**배당소득 증대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 신설
  -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저율(14→9%)로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
- 「**근로소득 증대세제**」: 중소기업의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을 초과해 임금 증가시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 10%, 대기업 5%)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시도 적용

## 조세제도 합리화

### 가산세 부담 완화

-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 → 1%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 → 1%(3월이내 0.5%)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 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 1% → 0.5%

### 납세편의 제고

-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 → 2회로 축소 (‘18년부터 시행)

### 기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기업상속재산가액) 개인기업의 기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 (자산처분 제한) 법인기업의 경우 **업종유지 의무,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 \*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법인: 주식 처분 제한 & 사업용 고정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 조세제도 합리화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	21원/kg(탄력)	<b>27원/kg(탄력)</b>
중열량탄(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	24원/kg(기본)	<b>30원/kg(기본)</b>
고열량탄(5,500kcal/kg 이상)	27원/kg(탄력)	<b>33원/kg(탄력)</b>

### 비사업용토지 제도 개선

- '16.1.1일 이전 취득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조정**  
(16.1.1→토지 취득일)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16년 세법개정 세수효과

###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 3,249억원

- ◆ (증가 요인)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조정 등
- ◆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계	3,249	2,539	△5,196	4,872	1,552	△518
소득세	△1,049	△677	△6,011	4,950	689	-
법인세	124	△7	△136	△30	832	△535
부가가치세	△391	△207	△184	-	-	-
기타	4,565	3,430	1,135	△48	31	17

### 계층별 귀착

고소득자/대기업  
↑ 7,338



↓ 3,813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증가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 총급여 6,100만원 이하)

## II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대내적 여건

#### 경제성장 고용

**'90년대 이후 투자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

\* 실질성장률(%) : ('81~'90) 10.2 → ('91~'00) 6.6 → ('01~'10) 4.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도 하락 전망**

\* 잠재성장률 전망(%, '15년 KDI) : ('16~'20) 3.6 → ('21~'30) 2.6 → ('31~'40) 1.9 → ('41~'50) 1.4

**성장-고용 연계 약화→일자리 창출여력 약화,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 일자리 여건 악화 조짐**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05) 19.2 → ('10)13.9 → ('14)12.9 \*\* 청년 실업률(%) : ('10) 8.0 → ('15) 9.2

#### 인구구조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 65세 이상 인구비중 지속 증가**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90) 5.1 → ('00) 7.2 → ('10) 11.0 → ('15) 13.1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6년 72.9%를 정점으로 지속하락 → 인구부양 부담 증가 전망**

\* 생산가능인구 비중(%, '16 통계청) : ('10) 72.8 → ('16) 72.9 → ('20) 71.1 → ('30) 63.1

#### 사회보장지출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지출 급증**

\* 사회보장지출(GDP대비 % OECD SOCC) : ('90) 28 → ('00) 48 → ('10) 90 → ('14) 104

#### 통일

**통일 이후 북한 인프라 구축 등 상당비용 소요 전망**

\* 독일 통일비용 : 20년간(90~09년) 연간 GDP대비 4~5% (14년 국회 예산정책처)

###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대외적 여건

**세계 경제**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저성장 장기화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GDP기준, % IMF) : (08) 5.5 (09) 4.01 (12) 3.5 (15) 3.1

**산업 구조** 4차 산업혁명 →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 산업구조 재편 전망  
\* 4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

**환경**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요구

- ◇ 잠재성장률 하락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복지수요 증가 및 통일 등에 대비한 **세입 기반 확보 필요**
- ◇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위한 조세지원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요구
- ◇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조세정책 운용 요구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역점**

⇒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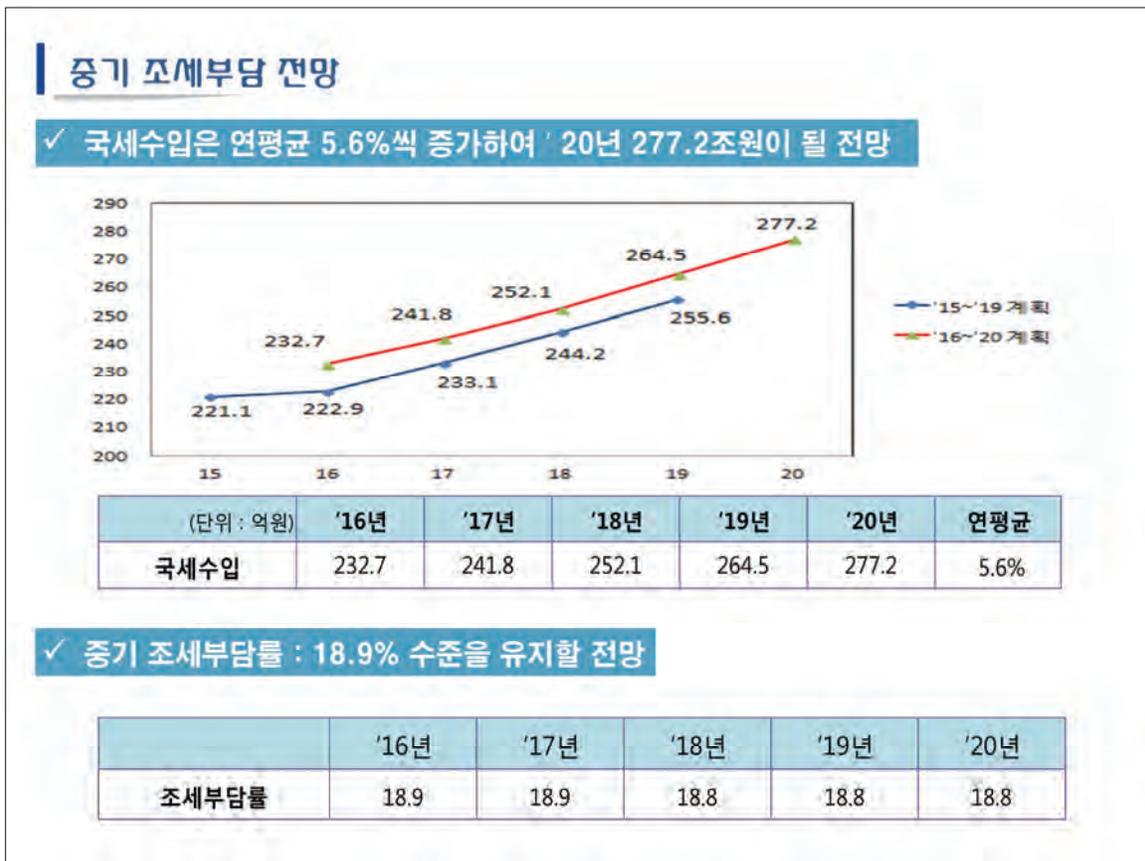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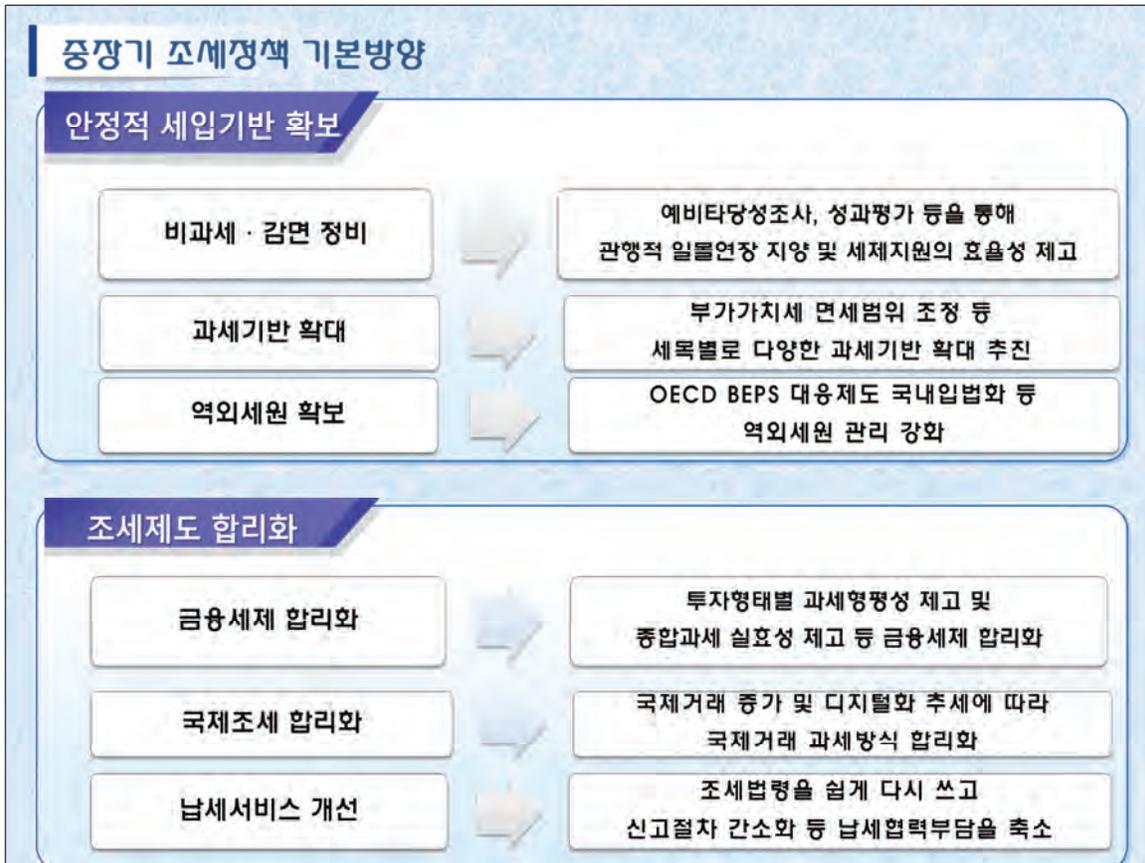
###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

#### 성장동력 확충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조세지원 확대, 청년·여성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투자·창업 활성화	→	신산업투자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

#### 과세 형평 제고

소득종류별 과세형평 제고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	소득세 면세자 점진적 축소 등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	→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대기업 고액자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 과세 강화



감사합니다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 제 2

##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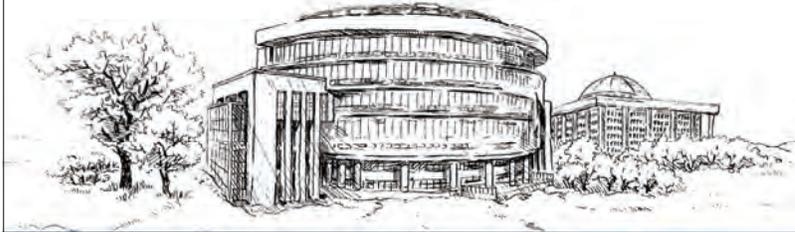




조세정책 토론회 (2016.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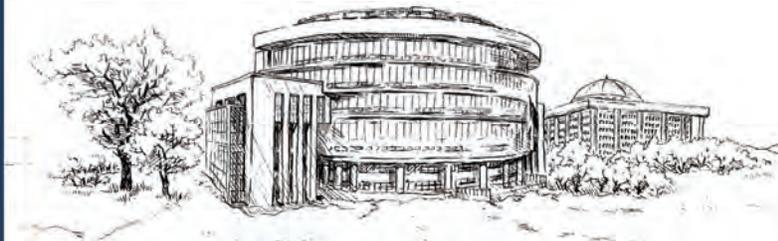
#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 용 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Contents

- 주요내용 및 평가
- 2017년도 세입전망
- 소득세
- 법인세
- 소비세제 등



# 1. 주요내용 및 평가

-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평가



## 01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평가

□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

기본방향	추진 전략
경제활력 제고 (6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li> <li>•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li> <li>•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등</li> <li>• 기업구조조정 지원: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한시적 포기 허용 등</li> </ul>
민생 안정 (4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중산층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li> <li>•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농수산물 및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확대 등</li> <li>• 농어민 등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등</li> </ul>

## 01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계속) 주요내용 및 평가

□ 경제활력 제고 67건, 민생안정 44건 등 개정항목은 총 215건

기본방향	추진 전략
<b>공평 과세 (30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반 확충: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등</li> <li>• 역외세원 확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 도입 등</li> <li>•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배당유인 감소 및 임금증가유인 증가 등</li> </ul>
<b>조세제도 합리화 (74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 권익보호: 가산세 부담 완화(납세협력위반 50% 경감) 등</li> <li>• 납세편의 제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등</li> <li>• 세제 합리화: 기업상속공제 개인·법인 간 형평성 제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kg당 24원→30원) 등</li> </ul>

5

## 02 평가 주요내용 및 평가

□ (전체) 현재 경제여건상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하나, 실효성은 미지수

-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15개 개정항목 중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진행되던 비과세·감면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음
  - 215개 개정항목 가운데 20개 항목 신설(9.3%), 195개 항목(90.7%) 제도조정 및 일몰연장
- 최근의 세수실적 호조(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20.8조원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로 예상되지만, 향후 사회부문 재정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재원마련책이 필요

□ (평가①)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

-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총 3,200억원(정부추산, 전년대비 합계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세수효과 평균치인 1조 6,6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목별 연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비교 >

(단위: 조원)	합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2011~2015년 평균	1.66	0.08	0.77	0.27	0.55
2016년	0.32	-0.10	0.01	-0.04	0.45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

## 02 평가(계속)

주요내용 및 평가

### □ (평가②)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정

- 대부분 기존제도에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음

### □ (평가③) 비과세·감면 정비방향과 역행

- 최근 3년 동안 비과세·감면 정비가 추진되어 왔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등을 위해 오히려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등 조세지출이 오히려 확대

<정부 세법개정안의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내역 및 감면액: 2013~2016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항목수	금액	항목수	금액	항목수	금액	항목수	금액
일몰도래	44	17,010	52	106,777	88	37,851	25	29,573
종료	17	2,127	7	1,906	19	831	4	26
축소연장	17	13,026	8	27,809	8	11,481	3	21,772
확대/단순연장	10	1,857	37	77,062	61	25,538	18	7,775

주: 금액은 일몰도래 항목의 조세지출액 합산액이며 세수효과를 뜻하는 것이 아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7

## 02 평가(계속)

주요내용 및 평가

### □ 향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세수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이 지속악화 전망
- 중장기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
  -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

< 장기 국가채무 전망: 기준선 vs 세입확충 시나리오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6. 8.

8

## II. 2017년도 세입전망

- 국세수입 전망
- 전망치 비교

### 01 국세수입 전망

2017년도세입전망

- 2017년 국세수입은 244.2조원으로 전년대비 7.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법개정안 세수효과(2017년 0.16조원)가 증가분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미한 수준
  - 2016년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전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8월까지 국세수입은 소득세(전년동기대비 5.1조원), 법인세(7.1조원), 부가가치세(6.9조원) 등 주요세목의 실적호조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0.8조원 증가
  - 2017년 국세수입은 244.2조원으로 2016년에 비해 증가추세가 둔화(8.8% → 3.0%)
    - 둔화요인: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2016년 높은 세입증가율에 대한 반락 등
  -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은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정부의 징세노력(tax effort),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부터 시행된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대상: 법인, 자영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 등을 통해 세수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2015년 이후 세수실적 개선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

## 02 전망치 비교

2017년도세입전망

□ NABO의 2017년 국세수입 전망치(244.2조원)는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 대비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NABO의 2017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정부 전망치 4.1%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
  - 2017년 GDP성장률 전망치(%): 정부(실질 3.0 / 경상 4.1), NABO(실질 2.7 / 경상 3.9)
- 2017년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6년 국세수입 전망을 정부예산보다 4.3조원 높게 보고 있어서, NABO의 2017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국세수입 예산안보다 높음
  -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이 이어져 2017년 소득세수(NABO 68.1조원)가 정부 전망치(65.3조원)를 2.8조원 상회

< 201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단위: 조원)	2016년 전망 (A)	2017년 전망 (B)	증감액 (C=B-A)	증가율 (C/A)
NABO(①)	237.0	244.2	7.2	3.0%
정부 예산안(②)	232.7	241.8	9.1	3.9%
차이(①-②)	4.3	2.5	△1.9	△1.0%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16.10

11

## ※ 최근 5년간 재정현황

2017년도세입전망

(단위: 조원)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추경	2017 예산안
총수입	341.8	351.9	356.4	371.8	401.0	414.5
총지출	323.3	337.7	347.9	372.0	398.5	400.7
통합재정수지	18.5	14.2	8.5	△0.2	2.5	13.8
관리재정수지	△17.4	△21.1	△29.5	△38.0	△39.1	△28.1
(GDP 대비)	(△1.3%)	(△1.5%)	(△2.0%)	(△2.4%)	(△2.4%)	(△1.7%)
국가채무	443.1	489.8	533.2	590.5	637.8	682.7
(GDP 대비)	(32.2%)	(34.3%)	(35.9%)	(37.9%)	(39.3%)	(40.4%)
국가채무 순증	22.6	46.7	43.4	57.3	47.3	44.9

주: 1) 국가채무(2016년 637.8조원)는 중앙정부채무(603.2조원)와 지방정부채무(34.6조원)의 합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16.10

12

### Ⅲ. 소득세

- 종합평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 01 종합평가

소득세

-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현실 경기를 감안하여, 서민·중산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하고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연장, 소액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 근로장려금과 월세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도 포함
- 세원확보 및 조세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 하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반복적인 일몰연장으로 세부담 감면이 상시화 되면서, 세수기반이 약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99년~, 2014년 조세지출액 1.6조원)
  -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주식 양도소득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은 적정하나, 비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항목(주택 임대소득 등)은 조세지원을 축소할 필요
  - 특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면세자 축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한계

## 0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

- (개정안)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
  - 공제한도(300만원)의 단계적 축소(소득 1.2억원 초과 200만원, 2019년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평가) 일몰연장과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조세지출 감소효과(현행 조세지출액 대비 5.4% 감소)는 크지 않음**
  - 1999년 도입 후 일몰연장이 반복되면서 공제가 확대된 상황에서, 민간소비 위축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제도 축소 및 폐지는 어려운 상황
    - 2014년 1인당 평균 공제액 233만원(총19.2조원), 소득 3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80% 이상 공제를 신청
  - 다만, 고소득층 공제축소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조세지출 감소액('20년 959억원, 기획재정부)이 전체 조세지출액('15년 1조7,889억원)에 비해 미미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15

## 0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계속)

소득세

- (평가) 1999년 도입 후 '자영업자 세원확보'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조세지출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해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 현재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79%에 도달
  - 공제한도 뿐만 아니라 공제기준선·공제율도 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관적인 조정이 필요



16

03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소득세

- (개정안)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기한(2015~2016년)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2017년 도입하기로 한 저율 분리과세(14%)가 유예
  - 예시) 2,0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 소득세 112만원(1,200만원 필요경비 적용)
- (평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용을 위해 과세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더라도, **소득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로 전환 필요**
  -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저소득 월세 가구 등 임차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는 한편, 임대인이 소득 노출에 부담을 느껴 월세 공급이 위축될 우려
  -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소액의 임대료에 의존하는 생활형 임대인보다 다른 소득을 함께 가진 고소득 임대인에 유리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향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세 당국의 임대차 정보 구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월세 공급 안정화 조치 등이 선행될 필요

17

04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소득세

- (개정안) 상장주식 과세대상을 확대
  -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 현행(지분율 1% or 지분금액 25억원 이상)
    - 개정안(1% or 1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대주주 기준: 현행(지분율 2% or 지분금액 20억원 이상)
    - 개정안(2% or 15억원 이상)
- (평가) 소액주주까지 과세되는 선진국 사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 감안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나, 지분율 및 지분금액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중 80%\*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
  - (지분율 기준) 동일규모 거래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의 주주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 높으므로 기준을 삭제할 필요
  - (지분금액 기준) 거래대금 및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각 기업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유주식 총액기준으로 단일화할 필요

주: \*김정식, “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연구-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14.6. 41쪽

18

## IV. 법인세

- 종합평가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용 관련 세제지원 강화
- 가계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 01 종합평가

법인세

- 신성장기술, 영화·드라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은 타당
  -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성장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등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시킴
    -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지식기반서비스업(15.3명), 제조업(6.0명)
- 다만, 조세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0여개의 경기부양 조세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원규모(NABO 추산 연간 지원효과 1,511억원)는 법인세액('17년 54조원) 대비 작은 수준
  - 영상콘텐츠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조세를 통한 기업지원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것으로 판단
    - 2017년 예산안: 27개 지역전략산업('17~'19년 3.1조원), R&D 프로젝트('17~'26년 1.6조원)

## 02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 (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성장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현행 R&D비용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와 일반 R&D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성장동력 관련 R&D 공제율이 높음
  - 대기업의 R&D공제율: 신성장관련(당기분 20%), 일반R&D(당기분 2~3% 등)
  - 신성장동력 R&D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회계를 일반 R&D와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개정안은 현행 29개 분야, 125개 기술인 신성장동력 R&D를 11개 분야로 개편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방안

21

## 02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계속)

법인세

□ (평가) 현재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해 신성장 R&D 공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부족 예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높은 공제율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속도(12.2%)가 일반R&D(13.4%)보다 떨어지고 한 전체 R&D의 0.3%에 그치는 등 신고실적이 저조
  - 대기업의 R&D 공제율: 신성장 관련(당기분 20%), 일반R&D(당기분 2~3% 등)
  - 관련 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등의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해 높은 공제율을 포기하고 일반 R&D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 발생
- 정부는 신성장 기술의 조세특례 가능여부를 확인해주고 공제신청 기업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지원자(help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R&D 비용금액 : 2009~2013년 >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연증가율
일반R&D	280,849	327,006	380,653	430,810	464,315	13.4%
신성장R&D	810	1,026	1,180	1,419	1,284	12.2%
(전체 대비)	(0.29%)	(0.31%)	(0.31%)	(0.33%)	(0.28%)	

주: 괄호( )안은 전체 R&D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조세지출건의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2

### 03 고용 관련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 (개정안)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
  - 서비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대부분 포함
    -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지식기반서비스업(15.3명), 제조업(6.0명)
  - 고용·투자·R&D 관련 조세지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대상을 거의 모든 업종(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확대
- (평가) 기업측면에서 정부의 조세지원 강화는 기업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 특성상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자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확대방안이 효과적
  -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는 시행시기가 짧고 전체 지원규모가 연간 1,349억원으로 작음
    - 분야별 조세지출액(2017년 기준): R&D(2.1조원), 투자(1.5조원)
  - 기업의 고용 관련 결정은 경영에 20~3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점, 인건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사무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선택되는 경향
  - 정부는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확대 측면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는 동 방안이 효과적

23

### 04 가계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법인세

- (개정안)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이후 임금·투자보다 배당만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설계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임금유인을 높이고 배당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중치 조정
  - 배당소득 증대세제: 종합과세자(25% 분리과세→5% 세액공제 전환), 분리과세자(9% 세율 유지)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초과시 세액공제 적용
- (총평) 개정 방향은 적절하나 세수효과(82억원)가 작고 적용기간이 1년인 점은 한계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3개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현행 제도 시행 후, 전체 기업의 배당액은 전년대비 25.1%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임금(8.2%), 투자(△4.3%)는 2009~14년 증가율(임금 9.6%, 투자 5.3%)보다 모두 낮은 수준
  -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당이 늘어났던 문제점의 개선은 기대되지만 세수효과는 미미
    - 3개 제도의 세수효과 합계 82억원(환류 587억원, 배당 △216억원, 근로 △289억원)
  - 한시적(2015~2017년)으로 운용되는 가계소득증대세제에 대한 개정은 1년만 적용되는 한계

24

## 04 가계소득 증대세제 재설계(계속)

법인세

□ (기업소득환류세제 평가) 제도 시행 후 배당을 중심으로 임금·투자에 대해서도 정책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배당유인은 감소하지만 임금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 등)과 미대상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

-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과세대상기업은 미대상기업보다 **배당이 크게 증가**하였고, **임금과 투자의 경우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효과 발생**(아래 표 참조)
- 개정안(임금증가 가중치 증가, 배당 가중치 감소) 효과
  - 배당증가유인이 감소하고, 과세기업이 기존보다 90개(628개→718개)가 추가되는 등 연간 587억원(세수효과: 현행세법 5,863억원→ 개정안 6,450억원)의 세수 증가 기대
  - 한번 인상되면 다시 낮추기 어려운 임금의 **하방 경직성** 등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임금증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기업의 행태변화 비교: 2015년 전년대비 증가율 >

	배당	임금	투자
과세대상기업	29.0%	9.5%	2.9%
미대상기업	3.3%	5.8%	△32.1%

자료: NICE신용평가사의 기업재무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5

## 04 가계소득 증대세제 재설계(계속)

법인세

□ (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 배당세제만의 효과는 전체 배당의 1.2%(3,562억원)에 그치는 데 반해, 제도운용에 따른 **비용(1,324억원)**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제도의 조기폐지도 가능**

- 제도도입 이후 '배당세제만 적용가능기업'의 배당증가율 증가효과(59.4%p)가 상당하지만, 기업규모(평균자본액 276억원)가 작아서 2015년 배당액(3,562억원)은 전체 배당의 1.2%
  - 배당소득 증대세제 연간 세수효과: △ 1,324억원(2016년, NABO 추정)
- '환류세제만 적용가능기업'(25.3%p)과 '환류세제·배당세제 적용가능기업'(17.4%p) 또한 배당증가율 증가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전체 배당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7.6%

< 환류세제 및 배당세제 대상기업의 배당증가 비교 >

(단위: 억원)	환류, 배당 모두 적용	배당세제만 적용가능기업	환류세제만 적용가능기업	양 제도 미해당기업	전체
법인수	468개	446개	2,273개	20,374개	23,561개
평균자본액	12,791	276	3,297	98	662
배당증가효과 (09~14년→15년)	17.4%p (9.4%→26.8%)	59.4%p (9.9%→69.3%)	25.3%p (6.4%→31.7%)	△9.8%p (8.7%→△1.1%)	
2015년 배당액 (전체대비)	135,911 (47.5%)	3,562 (1.2%)	114,722 (40.1%)	31,812 (11.1%)	286,007 (100.0%)

주: 배당증가효과는 2009~2014년 연평균 배당증가율과 2015년 배당증가율 차이분 의미  
 자료: NICE신용평가사의 기업재무자료(2,4만개 기업)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6

## V. 소비세 등

- 종합평가
-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인상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01 종합평가

소비세 등

- **민생안정, 역외세원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적절**
  - 중소재활용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연장
  - 역외세원 확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및 국외전출세제 도입
- **다만, 제도의 도입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 상존**
  - 반복적인 일몰연장은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른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할 필요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76년~, 2.1조원),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92년~, 0.7조원)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은 소비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02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소비세 등

-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kg당 24원 → 30원)
  - 저열량탄의 경우 kg당 27원, 고열량탄의 경우 kg당 33원의 탄력세율 적용
- (평가) 지구온난화·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과세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의 유연탄 소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부족
  - 유연탄의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후에도 2015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았음
    - 2011~2013년 동안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의 가격탄력성은 0.03~0.26으로 비탄력적
    - 2013~2015년 동안 발전용 유연탄의 가격과 소비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
  - 향후 환경오염 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에너지과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
    - 각 에너지원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수준을 감안하여, 탄소배출계수에 비례한 세율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9

03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비세 등

- (개정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
  - 재활용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경우, 매입가격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공제율: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9/109)
- (평가) 개정안은 중소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로 대규모 사업체가 조세지원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규모에 따른 한도설정이 필요
  - 최근 폐기물의 재활용률 증가와 중고자동차거래가 활성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보다 '중소사업자의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민생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매출규모가 큰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를 제한할 필요
    - 재활용폐자원 평균경감세액: 하위 30% (170만원), 중위 40% (630만원), 상위 30% (1,880만원)

30

## 04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비세 등

- (개정안) 거주자의 국외전출로 과세되지 못하는 국내재산의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를 신설
  -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며, 납세의무자를 대주주로 한정
- (평가) 국외전출세의 도입은 역외세원 확보와 국내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 예방적 효과 기대
  - 향후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 범위(국외주식, 파생금융상품, 조합 등 출자지분 등)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자의 국내자산과 역외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
  - 일본에서 거주자의 국내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채무조사(財産債務調査)」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산채무조사(財産債務調査)」제도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종류별로 그 금액이나 수량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매년(3월 15일) 제출하는 제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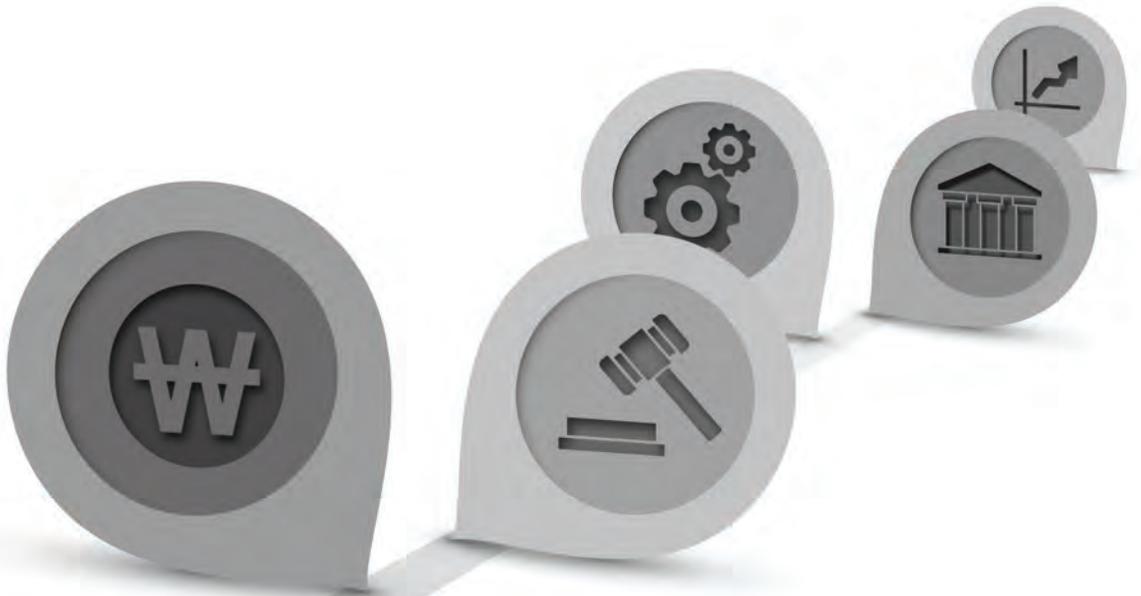
## 결론

-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2015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정에 그침
  - 2016년 8월 현재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0.8조원 증가하였으나,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정부의 징세노력,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금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0.32조원)는 예년 평균치(1.66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부문 재정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세법개정이 아닌 중장기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
- 현행 조세구조의 특징과 세목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
  -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자원배분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응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의 조화를 이루는 세제개편 필요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토론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1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 1.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부가 마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세입기반 강화 방안을 다수 포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개정안이라고 생각
  
- 특히,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조세제도 전반의 고용 중심 개편시도는 매우 바람직
  -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진전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이 가장 큰 문제
  - 세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고용에 둘 필요
  
- 또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개정 과제들을 많이 발굴한 것은 긍정적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평가할 만함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에 박차
  - 신산업은 고위험 수반,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신산업 투자(risk-taking)를 유도할 필요
  - 대기업이 핵심기술 투자를 선도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연관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는 동반성장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고용과 분배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2004년부터 대폭 확대된 이후 3년이 경과되어 가므로
  - 면밀한 실적 평가를 거쳐 적용기준, 지원금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다만,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등 고용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 좀 더 적극적인 세제측면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음

## 2. 향후 조세정책방향

- 향후에도 조세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면서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조세부담률\*은 '13년 이후 지속 상승 중으로 금년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과거 최고수준('07년 19.6%, '08년 19.3%)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13) 17.9% → ('14) 18.0% → ('15 잠정) 18.5% → ('16 추경) 18.9%
  
-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한 증세 논의에 대하는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봄
  -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는 투자·근로의욕 위축 및 성장잠재력 저하를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게됨

- 수출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찬 물을 끼얹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 불가피하게 증세가 필요한 경우 적정복지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봄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포용적 성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 방향

### 들어가며

#### 2016 정부의 세법개정안,

#### “경제 위기가 다양하게 심화되고 있음에도 무사태평한 대응책”

- “증세 없는 복지 기초를 이어간 정부의 세법개정안”
- “저부담·저복지로는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응할 할 수 없어”
- “공정과세를 통해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가야”
- “현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의 심화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벽에 부딪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 되고 있음
- 문제는 현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앞서게 됨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16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공식 통계 외의 다양한 양극화 지수를 발표하였음
  - 박근혜 정부 들어 상위 10%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부의 이전 부담은 줄어가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소득 상위 10%가 이자·배당소득을 90% 이상 차지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근로·배당·종합부동산 보유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상속·증여세 부담은 크게 감소했는데, 상위 10%의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고, 상속·증여세율이 명목상 최대 50%로 정해져 있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 50%는 의미없는 세법 규정으로 전락하고있음
  
- 소득 불평등 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 더욱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세계 주요국가는 조세와 재정정책을 동원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소득 재분배정책 의지는 물론 대응방안 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임
  - 박근혜 정부 초기 중산층 70% 달성을 내걸고 중산층 개념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가계소득 증대를 정책 1순위로 강조했지만 사실상 개선된 효과는 없는 상황임
  
-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은 조세 제도를 통해 지니계수가 평균 34.5% 개선됐는데 비해 한국은 그 효과가 9.2%에 불과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조세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부의 재분배와 정부운영의 재원조달에 관하여 거의 아무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와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했을 때 무책임한 정책 발표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세법 개입 핵심 방향으로 조세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재건 건전성을 유지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소득자 중심의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추진할 것임

-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 총 평

-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무사태평한 핵심적인 이유는 세수증가로 인한 연평균 세수효과가 "3,300"억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임
- 2011~2015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가 1.6조원인 것에 비하면 1/5도 안되는 수준임
- 향후 우리 재정은 세계적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국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 증가, 유화·철강·조선등 한계기업속출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복지재정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심각.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입 감소가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한데다 내수 경제는 건설업투자를 제외한 소비, 설비투자 지표 모두 부정적인 상황임
-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증대를 위한 keynesian solution(케인즈식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재정책대 즉 확장적 재정정책의 근본은 재정 확대에 있음
- 정부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extended fiscal policy)를 외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
- 수출, 내수의 경제성장기여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뒷받침 하는 경기 상승 견인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2017년 예산안 기초에서도 추경편성대비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긴축예산에 가깝다고 평가됨

-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이 안 좋은 경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를 통상 지칭하지만,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동시에 키우는 재정책대를 표현하기도 함.
  -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총수요확대는 선제적 경기부양효과에 중요함
  - 우리 세입기반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해 유가하락등으로 인한 제조업의 원가절감효과가 기업경영에 반영된 효과, 코리아판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반짝 내수경기가 살아난 효과가 존재함
  - 즉, 장기적 세입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시적 효과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 이를 위해서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하고, 어떻게 세입기반 효과 확대를 논의할 것인가 단서를 찾아야 할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단서를 정부의 2016-2020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이든,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무엇보다 양극화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질 수 있는 조세, 재정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의 경제 구조를 저부담·저복지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함. 즉, 공평과세 실현이 필요함
  - 공평과세 확립의 우선순위는 법인세 인상 등 초고소득층의 자본, 자산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면세자 비율 최소화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적 조세부담을 상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각론**

- 세법은 곧 국가의 근본적인 방향을 지칭하는 것
  - 하지만 우리 세법은 근본적으로 재벌 대기업 지원 위주의 세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효과는 그대로이며 예산정책처도 박근혜 정부 실제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는 당초 공약가계부 상의 18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3조원에 그쳤다고 분석하고 있음
  
- 재벌기업 위주의 정부 세법개정안 방향은 역시 변한 바 없는데,
  -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수혜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87%를 누리고 있음
  - 굳이 사내유보금이 과다한 회사로 하여금 투자촉진을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줄 필요는 없으며, 대기업에 대부분의 수혜가 돌아가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재정정책을 써야할 것임.
  - 특정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 세제는 그대로 둔 채, 수소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늘려줄 이유는 없다고 보임. 전기차와 균등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세제형평상 적합하다고 판단함
  
- 여전한 부자감세 혜택도 문제로 남아있음
  - 2015년 여·야 합의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하면서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하였지만, 과거의 투기수요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해주지는 않기로 했으나,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의 투기수요까지 적용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 면세점 사업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재조정 해주는건 결국 특정 재벌 대기업을 다시 지원하자는 것과 다름 아님. 게다가 공개하기로 했던 면세점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주택임대소득세 정책은 당초 17년 시행원칙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대선이 다가오니, 이를 슬쩍 발뺌하는 것으로 보임. 무책임한 눈치보기식 행정임

○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선된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참조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세금, 연금,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 지니계수는 0.29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0.314) 이후 가장 낮음.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도시 2인 가구 지니계수를 정권별로 비교해볼 때 현 정부의 지니계수는 노무현·이명박정부보다 개선됐다고 발표

○ 그러나 지니계수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소득층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을 통한 소득이 누락되어 있음

\* 참조 : 지니계수 산출을 위한 조사 가구 표본 수는 전체의 0.07%에 불과

○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에 따르면,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나타나 자산불평등이 소득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함.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율을 낮추고 서민과 중산층의 패자부활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갈수록 복지 제도가 후퇴하고 있음

\* 참조 :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9.1%로 OECD 평균 21.7%의 절반 이하.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뿐. 또한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값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역시 25.9%로 OECD 평균인 34.1%보다 낮은 편. 즉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이유

○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각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이에 조세와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와 재정정책의 분배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 OECD 회원국은 조세 제도를 통해 지니계수가 평균 34.5% 개선됐는데 비해 한국은 그 효과가 9.2%에 불과함 (조세재정연구원)

○ 소득의 불균형보다 자산의 불균형이 '불평등 심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증여 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 / 평균 1억 2천만원 / 실효세율 20%

☞ 최근 5년간 상위 10%가 부담한 실효세율 / 증여 18%, 상속 22%

: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 8천 921만원씩.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1인당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등 과세 필요

: 상위 10%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함. 실효세율이 18~22%에 불과. 이미 명목 최고세율 50%는 무의미해짐. 10억 또는 30억으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이하의 과세 미달자에게는 1%의 세율을, 기준점 이상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 610명, 5년간 주식으로 20조원 소득

: 최근 5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16만 6천 838만명(건수 기준).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은 총 48조 1천746억원. 1명당 2억8천875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셈.

\* 참조 :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넘길 때 과세(대기업 주식(20%, 1년 미만 보유는 30%), 중소기업 주식(10%))

: 주식양도차익은 대표적인 자본이득의 편중을 보여주는 사례.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

☞ 상위 10%가 이자소득 91% / 배당소득 94% / 종합부동산세 87.7% / 양도소득 83.1%

\* 참조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

: 이렇게 근로가 아닌 소득들에 대한 상위 10%의 쏠림현상이 심각. 특히 이자와 배당, 주식 양도차익처럼 근로가 아닌 소위 불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며, 누진적 성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

- 법인세의 정상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상위10%의 주식, 파생상품,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누진성을 높이고, 역시 상위 10%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함. 또한 상속과 증여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연령별 차등과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
- 이러한 공평과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함
  - 사회보장 확대는 세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중산·서민에게는 따뜻한 「**더불어 민주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① 고소득층 중심의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 ②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 ③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함
- 더불어 민주당의 세법 심사 원칙 및 세법개정안 방향
  - ①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의 개편을 단행해야 함. 출산율 1.2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되어야
  - ② 고소득 법인·개인의 우선 부담
    -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영업이익 높은 법인부터 우선 부담
    - 새누리당·정부는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
  - ③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처분 소득 수준을 높이고자 함
    - 반면, '08년 이후 실질 임금증가율 추이가 낮은 중산층·서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

## 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필요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복지·저부담 국가이며, 거의 모든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지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부자감세 정책으로 '14년 18.0%까지 하향한 조세부담률을 '07년 19.6%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세체계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임
  
- 박근혜 정부는 당초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18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재 현 정부가 이를 통해 달성 가능한 최대 세수는 6.3조원에 불과한 수준임
  -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도 약 3천억원의 세수 증가에 머물러 있어 '공약가계부'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조세정책으로 '13년 직장인 연말정산 증세 및 음식업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14년 담뱃세 인상을 들 수 있는데 모두 중산층, 서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의 저복지 수준을 극복하고 조세 형평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불가피함

## ② 법인세 부담 형평성 제고 필요

- 2012년 세수 실적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45조원으로 동일했으나 3년이 지난 2015년의 실적을 보면 소득세는 60조원으로 15조원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45조원으로 3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연말정산 증세로 대표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에 대해 세금부담을 급증시켜 온 정부가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부담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원초적으로 차단해온 결과임
  
- 특히 올해 담뱃세가 약 13조원 견힐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현재 법인세 수준의 30%를 담배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삼성, 현대와 같은 대법인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의 30%를 담뱃세에서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왜곡된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법인세 정상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과세형평성의 핵심 의제임

## ※ 참고자료

### □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요약)

#### ○ 발표 주요 내용(요약)

#### Ⅰ.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 ① 영업이익 높은 법인의 법인세 강화 등(법인세법)

-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 22%→25%로 원상회복(법인세법)  
(\*20대 총선공약)
-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19%, 2%p 인상(조세특례제한법)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가중치, 배당부분 제외(법인세법) (\*20대 총선공약)

##### ②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

-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
- 과표 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 도입

##### ③ 자본이득과세 강화(소득세법)

-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p 인상(20%→25%)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 14% →17%로 3%p 인상
-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원칙 시행

##### ④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 규제

- 「우병우 방지법」 도입(법인세법)
- 1)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2)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 2)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 추가 과세

- 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등(부가세·소득세법)**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실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하향(10만원→3만원)
  
- ⑥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상속·증여세법)**
  -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 축소(10%→3%)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 전환)
  -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세~50세 기준으로 각 연령별로 각자 세율 구간±3%p)
  
- ⑦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 성실공익법인 폐지
  -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 과세
  
- ⑧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소득세법)**
  -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

## II. 중산서민에게 따뜻한 세제

- ⑨ **기회균등장려금(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 확대)(\*20대 총선공약)  
(소득세법)**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예: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 도입
  
- ⑩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요건 제한(1.4억→2억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예:현 단독가구 1,300만원→1,700만원, 홑벌이 2,100→2,5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3,000만원) 상향 추진
  - 근로장려금 10% 상향 조정(단독가구 70→77만원, 홑벌이 170→187, 맞벌이 210→231만원)

⑪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부가가치세법)

- 물가인상등 반영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현 2,400만원→3,000만원)한도 상향 추진

⑫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20대 총선 공약)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서 각 1%/ 3% 세액공제 도입 추진

⑬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현행 7,000만원), 공제율을 15%(현행 10%)로 확대

⑭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대 70%(현행 50%서 확대) 감면(근속연수 1년~3년)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서 공제

⑮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여성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3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4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1. 개요

□ 2016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예년에 비해 세수규모가 작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개정사항도 적은 편임

- 세법개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제시되지는 않음
- 다만, 최근 수년간 세입기반 약화 문제가 제기되고 재정건전성도 불안정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계획의 구체화가 시급하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연되면서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매년의 반복적인 세법개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내년의 대선 과정을 통해 큰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의 비과세·감면 제도 운영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정부가 공언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감면이 연장되거나 다수의 새로운 감면이 추가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조세지출에도 예비타당성 평가와 심층평가 제도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의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비과세·감면 위주의 세제정책이 세입기반 약화의 주요인이 되고 조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침해하며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는데 반해, 다수 감면의 정책적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전면적인 일괄개편 방식을 통해 장기존속\*·완전폐지·한시유지\*\* 대상으로 재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함

\*장기존속: 사실상 항구화; \*\*한시유지는 전체의 10%선으로 최소화

□ 이하에서는 세법개정안의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보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임대소득과세의 유예기간 연장 조치
- 복지확대를 위한 법인세 증세 여부

## 2.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와 합리화

- 2017년에 실시 예정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를 앞두고, 과세의 순조로운 실현 여부와 이를 위한 준비, 그리고 과세체계 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규모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1년 더 유예할 것을 발의하였음
  - 2014년 초에 시작된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는 그 해말 기본적인 과세방안이 법제화 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당시 과세대상의 범위, 과세체계의 설정 그리고 과세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이 대립된 바 있음
  - 본격적인 과세를 6개월 앞둔 현재 실제 과세의 준비상태와 실효성, 그리고 적절성과 관련하여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제안은 향후의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임대소득과세 정상화는 조세정의와 형평성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세입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핵심적인 정책과제에 해당
  - 포괄적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비과세가 존재한다면 과세제도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
  - 조세제도의 엄정한 집행: 소득세법상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의 부족이나 과세당국의 징세능력 부족으로 과세가 정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다른 납세자들의 불복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형평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면서 임대소득에만 차별화된 특혜(저율과세)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 효율성: 소득의 원천 또는 종류별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차이가 나면 경제주체들을 세부담이 낮은 소득 위주의 경제활동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나 효율적인 자원의 배

분을 왜곡하는 문제가 초래

- 안정적인 세입확보: 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세율의 인상이나 세목의 신설과 같은 증세보다는 기존에 법제화된 과세의 정상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 현재의 주택임대소득과세는 과세체계와 원칙상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 중 하나로 과세하되, 9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6년까지 비과세하며, 2017년부터는 저율 분리과세 할 예정(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
- 과세방안이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과세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세부담의 수준도 매우 낮아진 상태에 있음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의 체계를 혼용함으로써 과세체계가 불분명해졌고 종합소득과세의 기본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임

#### □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하며, 과세강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원칙과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조세저항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수준 및 방법을 중심으로 과세합리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와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부족한 상황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나가면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와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이 조속히 재설계되어야 함

## □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연혁

- 1999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2000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임대소득부터 과세 시작
- 2006년에는 2주택(고가주택은 1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
-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은 간주임대료 방식 과  
-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해서 월세 수입으로 환산한 것
- 2014년 법 개정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는 아래의 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적용
- 2014년 이전에 주택임대과세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것은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과세를 강제할 수 있는 임대소득 자료의 부재 때문(대부분 임대소득 신고 누락)

소유주택	월세	전세(간주임대료 과세)
1 주택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만 종합소득과세	비과세
2 주택	종합소득과세	비과세
3 주택	종합소득과세	보증금 3억원 이상만 종합소득과세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나, 소득은 개인별로 과세

## □ 주택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란

-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가격정보가 담긴 임대주택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같은 해에 월세소득공제를 통한 세입자 지원을 강화 조치와 병행하여 월세정보를 신고 하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기반이 확보되기 시작
- 과세기반 확보와 동시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발표(2.24 조치)
  - 소규모(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 세원노출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려는 목적
- 같은 해 3월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과세 2년간(2015년 말까지) 유예, 필요경비율 상향

조정(45%에서 60%), '기본공제 400만원 제공'을 포함하는 수정안 발표

- 추가로 2004년 6월에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2016년 말까지)하고, 3주택 소규모 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허용하는 재수정안 발표

#### □ 2014년 12월 개정: 주택임대소득과세 제도의 법적 체계

- 연간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는 고가주택이나 주택수에 상관없이 2014~2016년까지 비과세, 2017년 이후 분리과세(14%)
- 동시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 면제, 필요경비 60% 공제, 주택임대소득공제(400만원)의 규정도 함께 적용
- 전세임대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

#### □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특정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의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음
  - 이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특징
  -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소득세 포괄주의 채택
- 또한 임대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한다는 전제 하에, 임대소득 창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을 공제해주고 있음
  - 주요국들은 이자비용 등 임대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비를 대체로 인정
- 임대사업 손실의 공제 및 다른 소득과의 통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
- 대체로 주요국들에서 임대소득 과세는 사업소득 과세체계에 따라 이루어짐
  - 우리나라에서 임대소득 2000만원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산소득 과세체계의 속성을 일부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소득 과세체계는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체계를 혼용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

##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과세

- 대부분의 선진국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하되 합리적인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허용
- 또한 예외 없이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에는 모두 과세
- 1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고 있음
- 전세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사례는 없음

##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 조사대상 각 국의 경우 미실현 이익인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사례가 없음
-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에 특수한 사례
- 특히,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소득 과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음

## □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 주요국들의 경우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즉, 주택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특례 부여하는 사례는 없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다소 복잡한 편

## □ 2014년 개정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효과적 과세절차 마련: 특정 임대소득의 분리과세는 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분리과세의 기준금액과 적용대상의 설정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주는 충격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적절히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논란
  - 특히, 현재의 간주임대소득 과세는 세수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의심되기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함

- 이증과세 초래 문제나 과세 실효성 차원 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전세보증금 간주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
- 주택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소득의 수준에 기초한 단순하고 엄정한 소득세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2017년에 예정된 임대소득과세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

-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임대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순조로운 과세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달리 현행 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에 본격적인 과세가 처음 실시되는 2017년에 임대소득 신고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도하지 않은 임대소득 신고 누락의 위험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이는 것이 관건임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 등록 의무제도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함
- 또한 단기적으로는 임대소득 과세자료의 전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전자세정이 납세자에게 주는 편리함과 행정적 측면의 효율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임
  - 과거에 임대소득 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게 이러한 임대소득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은 조세순응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 3. 복지확대를 위한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 ■ 법인세 증세론의 유의사항

- 공제방식 전환과 담배세 인상 등으로 납세자 불만가중, 법인세율 인상이 증세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음
- 법인세 증세론의 배경에는 경제학 이론으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측면의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
  - 국가적 과제인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마련을 가계부문에서만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특히 저축의 여력(사내유보금)이 있는 대기업 부문이 복지재원의 분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경제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공동체의 요구
- 그러나 법인세율의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비효율이 크기 때문에,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 져야함
  -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 증세론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I

-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보편적 복지확대의 자원 조달 어려움
  - 전체 과표구간 3%p 인상 → 세수 증가 약 6.6조 원
  - 최고 과표구간 (과표 200억원 초과) 3%p 인상 → 세수 증가 약 4.2조 원
  -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자원 확보할 수 없음

〈법인세 인상시 세수증가 징수액 기준: 산출세액 및 공제율 활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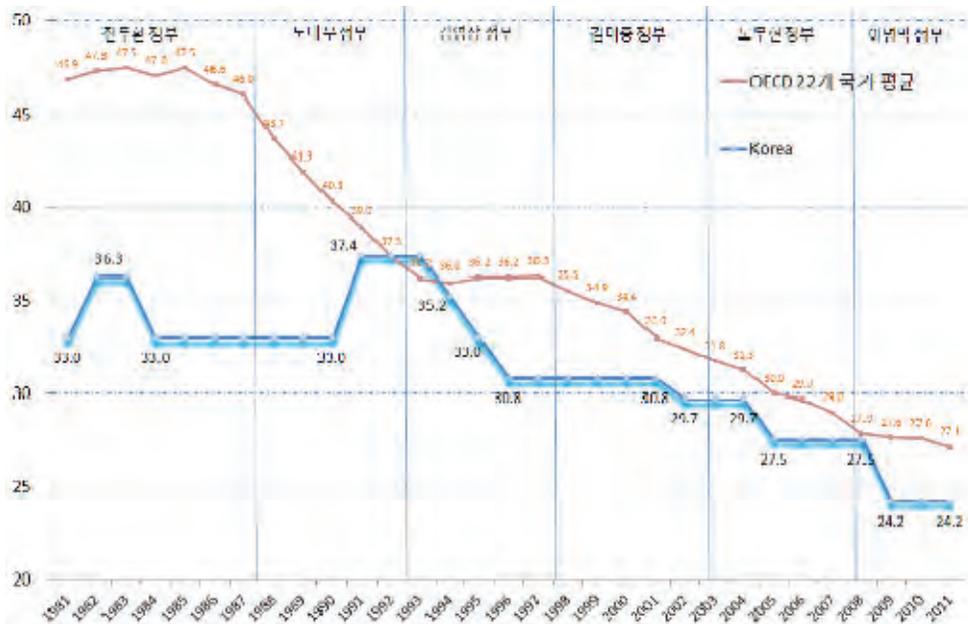
	1%p 인상 시
2억원 이하	1,045억원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7,981억원
200억 초과	1조 4,463억원
합계	2조 3,490억원

\*김우철(2015)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II조세경쟁의 국제적 추세 지속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유지 문제

- 지난 30년 간에 걸쳐 각국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 한국은 선제적 인하
- 그 동안 세율인하에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일본도 조세경쟁에 동참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
- 기업의 재무자료에 기초한 세부담 지표를 살펴보면 한계실효세율 OECD 평균 수준

〈우리나라와 OECD 22개국의 법인세율 추이, 1981-2011〉



###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III

- 자본의 높은 이동성(mobility)으로 자본유출 위험, 경기침체의 장기화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한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
  -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 높은 자본이동성
  - International Large Business Group (Apple, Starbucks 등)의 국제조세 회피 노력이 점차 일반적인 현상으로 고착화
  - 실제 자료(세율 대비 세수의 추이)에 따르면, 법인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의 인상보다는 세원의 확대가 더 효과적
  - 자본의 높은 이동성은 법이나 국민감정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은 각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 세율인하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투자·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IV

- 법인 의인화 오류로 인해 법인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할 것으로 착각

Question: 부유한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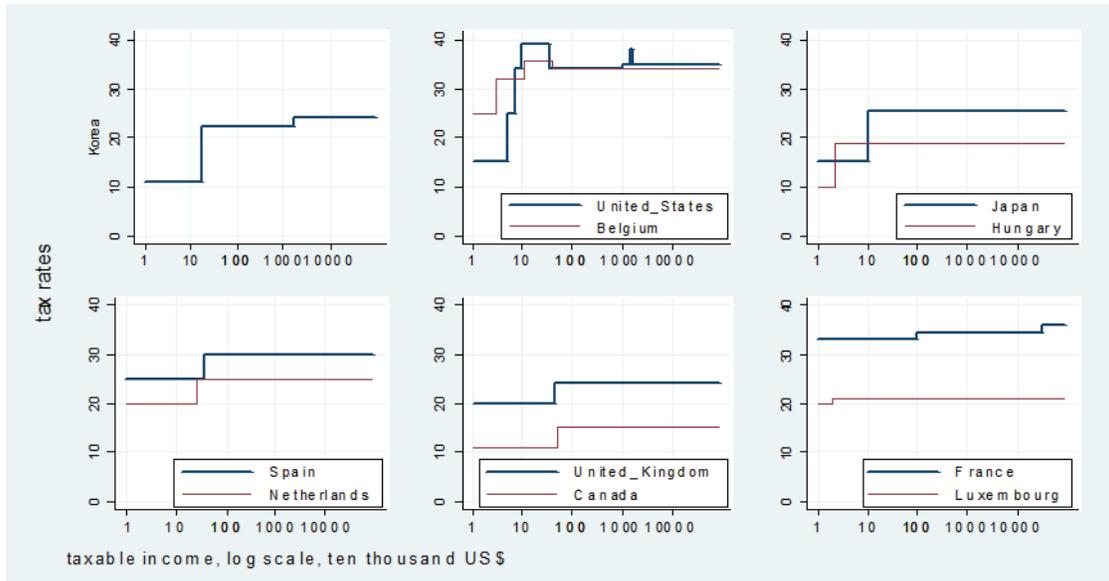
법인세 과표구간 세분화 한 누진성 강화가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법인세 인상 = 부자증세?

Answer: NO, 법인세 인상과 소득재분배 효과는 서로 거의 관계가 없음

- 자본의 규모가 수만 배씩 차이 나는 두 기업을 (인간의 경우처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여 소득 크기에 따라 담세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오류(자본의 가분성)
- 10명 주주 중소기업: 10억원 소득 (주주 1인당 1억)
- 10만명 주주 대기업: 1조원 소득 (주주 1인당 1000만원) \* 국민연금 주주
- 실제로 누가 더 담세력이 높은가? 법인세의 누진세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부합하는가?

〈OECD 국가중 누진적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들의 법인세 구조〉



- 33개의 OECD 국가들 중 11개 국가만이 누진적인 법인세율 체계
- 이들 중 한국/미국/프랑스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일세율 체계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V

□ 법인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심하고 높은 비효율 초래

- 법인세 증세론의 실질적인 문제는 ‘누가 실제로 법인세 인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가?’
- 기업은 고용·임금을 조정하거나, 생산물 가격인상 통해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 김승래·김우철(2015): 법인세율 3%p인상은 약 0.66조원의 효율비용 초래, 증세의 경제적 부담은 소비자(17%), 종업원(8.5%), 주주(15.1%), 사내유보(59.5%)에 귀착

〈법인세율 3%p 인상의 경제적 효과: 세수효과, 신고액 기준 단순비례법〉

	효율감소 0.66조원 (10.8%)	소비부문 1.01조원 (17.0%)	소비부문 1.01조원 (17.0%)	소비부문 1.01조원 (17.0%)
합계 5.96조원 (100%)	세부담 증가 5.3조원 (89.2%)	생산부문 4.95조원 (83.0%)	노동 0.51조원 (8.5%)	노동 0.51조원 (8.5%)
			자본 4.44조원 (74.5%)	배당 0.89조원 (15.1%)
				유보 3.55조원 (59.5%)

\*김승래 · 김우철(2016)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VI

-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 다양한 법인세 인상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세율인하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부담은 감세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3년간 법인세법개정으로 인한 법인세 인상 세수효과:
- 약 4조7천억원 증가 (\*김우철, 2016)
- 세율인하 이후 법인세수는 '08년 39조2천억원에서 '15년 45조원으로 매년 약 2.0% 증가
- 두 번에 걸친 최저한세 인상:8천억/기업소득환류세제: 6천억원
- 지방법인세 감면폐지: 1조원 /R&D 세액공제 축소: 3천억원
- 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1조원/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4천억원/기타: 6천억원

▣ 2013년 이후 대기업 대상 주요 증세조치

연도	항목	개정 내용
2013년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 인상 : 16% → 17% ('12년 14% → 1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축소	기본공제율 축소 : 2~3% → 1~2% ('11년 이후 매년 1~2% 축소)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	1) 증가분 산식 조정 - [당해연도 R&D지출액 -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 x 40%)] → 직전 3년 평균('12년) → 직전 2년 평균('13년) → 직전 연도('14년) 2) 당기분 공제율 한도 축소 : 6% → 4%
	R&D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	매출액 3%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했던 연구인력개발투자 준비금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 종료
	연구인력개발비용 공제 대상 축소	비연구전담부서 직원 인력개발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공제 축소	공제율 축소 : 10%(의약품 개선시설 7%) → 3%
	환경보전시설투자 공제 축소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축소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공제 축소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세후 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배당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축소	대기업 대상 기본공제율 폐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한도 전환	일괄한도 계산방식 폐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축소	외국 순회사 공제대상 제외 자회사 인정기준 지분 강화 : 10% 이상→25% 이상
2015년	업무용 승용차 과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강화 :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업무사용 입증 등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신설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 신설
	연구인력개발설비 공제 축소	공제율 축소 : 3% → 1%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축소	

▣ '13년 이후 기업 증세 조치의 세수효과

내 용		세 수 효과(억 원)	
최저한세율 인상('12년, '13년)		7,745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14년)		5,961	
업무용 승용차 과세 도입('15년)		2,98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13년~)		6,497	
시설투자공제 축소	연구인력개발설비('13년)	1,468	3,437
	에너지절약시설('13년)	1,547	
	환경보전시설('13년)	422	
연구인력개발비 축소	준비금 손금산입 종료('13년)	825	3,196
	산식변경 및 공제율 축소('12년~)	1,000	
	비연구전담부서직원 공제 폐지('13년)	1,37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한도 전환('14년)	2,444	4,272
	자회사 인정기준 강화('14년)	1,828	
법인세 계		3.4조 원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14년)		3,176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3년)		9,800	
지방세 계		1.3조 원	
계		4.7조 원	

\*김우철(2016)

### ■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VII

- Tax Mix: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소득세 비중 매우 낮은 상태
- Tax Burden: 실효세율에서도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인 반면 법인세 부담은 평균수준
  - 효율성: 경제적 왜곡의 정도, 조세효율비용, 성장친화성
  - 형평성: 소득재분배 효과
  - 외부효과 조정: 사회적 및 개인적 순편의 격차 조정하는 피구세(환경세)
  - 충분성(세원의 규모)/보편성(과세대상의 범위)

### ■ 조세·국민 부담률 국제비교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4.8%)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7 ~ 34%)	집단 III (35 ~ 42%)	집단 IV (43% 이상)	전체
국민부담	24.8	22.6	30.5	37.6	43.6	33.7
조세부담	18.7	18.6	22.5	25.4	32.7	24.7
1인당 GDP	30,011	30,285	32,447	44,149	43,274	37,010
해당국가		멕시코 칠레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OECD 회원국

\*안종석(2015)

### ▣ 조세수입구조 국가비교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4.8%)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7 ~ 34%)	집단 III (35 ~ 42%)	집단 IV (43% 이상)	전체
소득세	3.7	6.5	7.0	8.4	12.9	8.6
법인세	3.7	3.1	2.8	2.2	3.8	2.9
사회보장	6.1	4.0	8.0	12.2	11.0	9.0
일반소비세	4.3	4.5	6.3	8.0	7.9	6.8
개별소비과세	2.1	1.3	2.7	3.1	3.1	2.6
재산과세	2.6	1.7	1.8	1.4	2.1	1.8
국민부담	24.8	22.6	30.5	37.6	43.6	33.7
조세부담	18.7	18.6	22.5	25.4	32.7	24.7
1인당 GDP	30,011	30,285	32,447	44,149	43,274	37,010

\*안종석(2015)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 론 5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 201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 1. 세제개편이 제출된 시점의 국가 재정

3.5%의 경제성장을 전망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2016년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4%(9.1조원) 증가하는 382.4조원, 총지출은 3.0%(11.3조원) 증가하는 386.7조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총수입은 2.4%의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의 이행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은 3.0% 증가 수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하반기 들어 조선 및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위축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마련된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세출확대 9.8조원 및 국가채무상환 1.2조원으로 재원은 2016년에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9.8조원 및 2015년 세계잉여금 1.2조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표 1〉 2016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조원, %)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A)	2016년 추경(안) (B)	증감 (B-A)
총수입 (증가율)	371.8 (4.3)	391.2 (2.3)	401.0 (4.9)	9.8
총지출 (증가율)	372.0 (6.9)	386.4 (2.9)	395.3 (5.3)	8.9
재정수지 (국내총생산 대비)	-38 (-2.4)	-36.9 (-2.3)	-36.1 (-2.2)	+0.9
국가채무 (국내총생산 대비)	590.5 (37.9)	644.9 (40.1)	637.8 (39.3)	-7.1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 2016. 7.22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는 총수입은 401.1조원이며 국세수입은 232.7조원이다. 총지출은 393.5조원으로 일반회계 총계기준으로는 11조원 증가한 것이다. 재정수지는 당초보다 -2.3%에서 -2.2%로 0.1%p 개선되며 국가채무는 당초보다 40.1%에서 39.3%로서 당초보다 0.8%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2016년의 추경(안)을 반영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총수입은 2015년 대비 401.1조원으로 29.2조원 증가한 것이며 총지출은 393.5조원으로 2015년 대비 23.3조원 증가한 것이다. 재정수지는 여전히 -28.1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2.2%이며 국가채무는 2015년 대비 47.3조원 늘어난 637.8조원으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39.3%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총수입은 2016년 예산안 대비 23.3조원 증가한 414.5조원이며 총지출은 400.7조원으로 2016년 대비 14.3조원 증가한 것이다. 재정수지는 -28.1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7%으로 약간 낮아졌고 국가채무는 여전히 2016년 대비 37.8조원 늘어났으며 총 682.8조원으로 예측되어 국내총생산 대비 40.4%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201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조원, %)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 (B-A)
총수입 (증가율)	391.2 (2.3)	414.5 (6.0)	23.3
총지출 (증가율)	386.4 (2.9)	400.7 (3.7)	14.3
재정수지 (국내총생산 대비)	-36.9 (-2.3)	-28.1 (-1.7)	8.8
국가채무 (국내총생산 대비)	644.9 (40.1)	682.7 (40.4)	37.8

자료: 기재부, 2016. 8.

다음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50조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의 전망치를 제외하면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매년 거의 2%p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매우 어려우므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하여도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세계시장 이자율 변화에 따라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국가리스크 증가와 국가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높고 공기업 부채가 숨겨진 상황에서 우리 재정의 리스크는 다른 나라와 수평 비교하기 어렵다. 국가부채의 문제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아주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표 3〉 2012년 이후 국가채무 동향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전망)	2017(전망)
국가채무	443.1	489.8	533.2	590.5	637.8	682.7
(국내총생산 대비)	(32.2)	(34.3)	(35.9)	(37.9)	(39.3)	(40.4)

## 2.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매년의 세제개편 내용의 주요 골격을 살펴본다.

2013년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별적 하향평준화 대신에 기업소유자에게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무력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및 기업소유자에 대한 호혜적 과세체계를 변함없이 유지시켰다. 근로자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시행착오와 논란이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측면의 개편이었다. 해외투자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강화는 매우 필요한 조치였으나 소극적 개정에 그쳤다.

2014년의 세제개편은 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이었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수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며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수혜자는 배당을 지급받는 자산가로서 비대칭세제였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임을 명백하게 하였다. 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명분에 비하여 너무나 사소한 품목에 국한되어 시늬에 그쳤다. 8년 자경농지 요건에서 재촌을 구분하는 거리기준을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본래 남용이 극심하여 폐지해야 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꼴이 되었다. 상속증여세 경감(금융재

산상속공제 한도 3억원으로)도 서민이 아니라 자산가를 돕는 개편이었다.

2015년의 세제개편은 정책목표로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평과세도 표방했으나 공평과세는 대체로 허울이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또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도입하였다. ISA<sup>1)</sup> 등과 같은 비과세감면제도의 수혜자를 찾아보면 대체로 대기업/자산가 계층이었다. 2015년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조세체계의 왜곡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졌다.

### 3.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로서 세 가치를 거론한다면 저축 및 자본 친화적 세제, 가족 및 자녀 적대적 세제(소득세 공제제도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계층별 정책의 불연속성을 들 수 있겠다.

#### 자본친화적 세제

법인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간접투자에 대한 과세)를 호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유리하다는 논리의 경제적 근거가 매우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립된 우리의 조세체계는 요지부동이다.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의 작동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대하여 제공하는 호혜적 과세가 자본유치에 효과가 없고 다만 국내의 세수입을 외국정부의 세수입으로 옮겨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에 근거하여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대체로 외국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이 경우 원천지국과세의 영향은 거주지국의 외국세액공제제도로

1)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제안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은 기존의 재형저축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이 적용된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추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ISA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활용가능하다. 이 정도라면 그 수혜층이 소득10분위에서 어느 계층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기존의 재형저축이 소득 5/6/7분위의 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ISA는 소득9/10분위 중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수혜자로 포함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인원은 2013년 기준 14만명 수준이며 통합소득자는 1970만명 수준이었다.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던지 간에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수준은 거주지국의 수준으로 균등화된다.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투자지를 옮길 이유와 개연성이 없어지는 것이다.<sup>2)</sup>

〈표 4〉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내용

소득의 종류	원천지국 과세	거주지국 과세 (외국세액공제제도)	한미조세조약의 예(%)
배당	제한세율	거주지국의 세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	15 10(10% 이상 지분소유의 법인간 배당의 경우)
이자	제한세율	상동	12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동	15 10(저작권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 권리의 사용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투자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자료: 자체 작성

위의 표의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25%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낮춘 것은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며 단지 국내자본에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만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충분히 축적된 저축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동원하여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이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자본수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와 금융산업이 주도하여 확산시키고 노력하고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sup>3)</sup>

2)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의 김유찬(1994), 안종석(1994)의 연구에서도 이미 90년대에 제시되었다; 김유찬,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안종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3)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안 포함.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현행 세율 14%)에 대해 비과세.

국내경제에서 자본의 초과공급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누적된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여서 국민경제의 교란/위험요인이 되고 있고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도 10대 그룹의 기업(비금융업) 자산구성에서 보면 총자산 1,057.8조원에서 당좌자산의 비중 28.1 %에 달하였다(즉 298조원 수준).<sup>4)</sup>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 불안, 기타의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저축동기가 강하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초과저축 상태이며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해외자본수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이해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이다. 기존의 국내 조세체계(자본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국내경제의 자본부족상태,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해외 자본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를 수정한 연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자본유인이라는 정책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이다.

## 가족 및 자녀 적대적 세제(소득세 공제제도)

소득세 공제체계는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여 과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개개인들의 경제적 실상을 반영하는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개인적 상황이란 부양가족의 수, 교육비 부담, 의료비 부담 등의 가족들의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가 가지는 특별한 성격 하나는 근로소득공제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에 부양가족공제의 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에 그 수준이 너무 높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것인데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이 높다. 2007년에 42.2%에서 2013년에 32.1%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가 2014년의 이 수치는 거의 50%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면세비율은 2007년 35%에서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면세비율이 23.1%를 차지한다.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사업자의 면세

4)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 일본 등 OECD 평균인 20% 수준의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30.7%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공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높은 근로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적 이유는 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가 충분하지 않고 또 사업자들은 경비사용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제출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들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득세 전체 과세체계에서 본다면, 사업소득자는 각종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상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용이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탈루율도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특별공제 중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차별적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에게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꼭필요한 개인적 지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특히 정직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근로소득공제액의 과다로 인하여 정작 정당하면서 저출산 추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세법은 가족 1인이 추가되면 해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을 연 15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액수는 기초생계비 수준에 비추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sup>5)</sup>

## 소득계층별 조세정책의 불연속성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2013년 근로소득자 16,359,770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가 11,238,611명, 그리고 과세미달자가 5,121,159명으로서 과

5) 이러한 문제점은 소득세 공제체계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세수입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동시에 인적공제를 최소생계비 수준을 감안하면서 확대해야 한다. 또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자에게 허용하는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를 허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업소득자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받을 소지는 차단하여 과세공평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중립성은 유지되며 그러나 근로소득자 중 부양가족수가 많은 가구, 즉 자녀가 많은 가족은 유리하게 되고 가족 수가 적은 가구는 불리하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경비의 신고를 성실하게 사실에 부합되게 신고하던 사업자는 상대적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던 사업자는 불리하게 될 것이다.

세미달자 비중은 31.3% 수준이다.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 비중은 2014년 소득세공제제도의 개편과 2015년 이에 대한 제도 수정 조치 이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50% 육박).

2013년 소득십분위자료(홍종학 의원실 제공 소득백분위자료에서 도출)에서 우리나라 소득8분위와 소득9분위의 경계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 3,517만원, 통합소득의 경우 연 4,642만원으로서 모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과세미달자 포함 총 16,359,770명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연 1,153만원, 과세미달자 포함 총 19,669,055명 통합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연 1,975만원이다.

소득 5/6/7분위 근로소득자 및 통합소득자의 경우 매우 낮은 실효세율을 보여서 3% 이하이다. 거의 면세자에 가까운 수준인 것이다.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금액과 통합소득금액은 9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분위에서 크게 증가한다. 9분위와 10분위의 근로자의 경계소득은 연 5,347만원이고 상위 1%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연 2억 209만원으로 급상승한다. 마찬가지로 통합소득자의 경우도 9분위와 10분위의 경계소득이 연 6,731만원이지만 상위 1%의 통합소득은 연 3억 2,597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소득세 관련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비율을 줄이려면 소득 4분위 이상의 계층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 반면 소득4/5/6/7/8분위도 연소득 5000만 이하 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더 이상 면세점 비율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된다(소득의 절대적 수준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시각).

어떤 경우라도 소득 9/10분위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세제개편은 ISA 관련 규정 등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지금도 세법에서 담고 있다.

#### 4. 201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재정적자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리고 거시경제 운영의 관점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은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경제상황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 저하, 내수부족, 복지수요, 고령화, 청년실업, 노동시장 상황 등은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제약조건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증세를 우회할 수 없다. 2016년 하반기의 국가채무의 증가 전망이 2016년 초에 예측한 것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연초의 예측보다 2016년의 세수입이 높게 실현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세법개정을 통한 노력에 세수증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에 대한 예측을 낮게 하여 예측대비 높게 실현된 담배소비와 이로 인한 담배소비세 수입, 부동산 경기 일시적 활성화에 따른 양도세 수입의 호조 등에 상당 부분 힘입은 것이다.

2016년의 세제개편안에서는 또한 앞에서 지적된 세 가지의 우리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개발시기 한국경제는 자본/기술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상품/노동시장에서도 공급초과현상이 지배적이다. 소비수요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배소비세 증세 이외에 의미 있는 증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증세를 타부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요지부동의 자세이다. 증세가 경제활성화에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그 경제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증세를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정부가 적소에 활용하는 것인데 경기에 나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어디서 세금을 징수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민간분야, 특히 대기업과 자산소득자들이 적극적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수백 조 규모에 달하는 금융자산에 저율의 법인세율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조세공평성과 응능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거시경제운용의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다.

## 5. 2016년 세제개편안의 개별 조항들에 대한 의견

2016년 세제개편에서 담고 있는 수많은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평년에 비하여 개편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에 국한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 R&D 공제율 확대와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것이다.

금년의 세법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으나 매우 중요한 사안인 법인세율과 법인세분야 비과세 감면의 폐지에 대하여는 이미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 임대 소득 관련 세제

주택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하고 임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2016년 개정안은 담고 있다.

정부는 임대소득과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전월세로의 전가를 명분으로 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단지 자산가들의 자산소득 보호에 그치고 심각하게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하여는 즉각, 제대로 과세하고 이 세수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학의 이론은 공급이 고정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주택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재화이며 장기적으로도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되고 있는데 이는 월세로 환산하면 약 166만원이다. 이러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다른 소득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고수익자들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의 최저임금 135만2230원보다 높은 수익인 것이다.

이러한 주택임대 비과세가 자산가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서민 주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가구가

전체의 38.9%이다. 또한 전세 및 월세 거주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요한 특징은 전세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월세거주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혜택으로 임대사업이 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일반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그리고 준공공임대는 감면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였다. 임대사업자는 증가하여 세제혜택을 보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재화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공급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없고 세수감소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은 필수재 성격의 재화로서 공급 및 수요의 작은 격차에도 가격변동이 심하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정부가 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해야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초기 임대료 제한 등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경비 4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지나친 혜택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

## 기업 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이익에 대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책임규명, 공적자금 투입 여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만 야기할 것이다. 국책은행의 자금확충펀드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는데 세제지원부터 약속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 기업 공제 감면 관련 세제

미래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중견/대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시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자산처분시에도 가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자산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감면제도에서 대기업의 혜택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기업의 R&D 투자는 투자비용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고 이에 더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해 이중의 지원이라서 현재에도 이 수준은 과도한 형편인데 이 공제율을 더 확대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그들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활용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왜 정부가 이중의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이 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공유적 자산으로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10대 기업의 R&D세액공제 금액 점유율은 2009년 63.8%에서 2010년 70.6%, 2011년 72.4%, 2012년 77.4%, 그리고 2013년 85.8%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 상위 10대 기업은 사내유보자산이 301.4조원 (2013)에서 351.2조원 (2015)으로 증가하는 등 이익규모가 크고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므로 정부의 조세지원은 불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문제, 법인에 대한 혜택에 대한 형평성, R&D분야 조세지원의 효과성 및 대기업 조세지출의 쏠림 등의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세낭비 사례이며 형평성의 훼손이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혜택이 매우 큰 제도이다.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이번 사업용자산 처분 의무의 사후조건을 폐지하더라도 가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혜택이 매우 큰 제도이므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 제도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상속인의 상속자산이 기업지분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업지분 자

체를 매각하여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이 경우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공제를 제공하는 요건은 우선 해당 공제대상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가업이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가족에게 기업이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기업이어야 한다. 다른 이에게 기업이 승계되어도 경쟁력이 유지되면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가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sup>6)</sup>

다음으로 상속인에게 기업의 지분자산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고 가업은 가업 상속공제 없이도 잘 승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가업을 승계하여 잘 이어갈 수 있는 상속인이 이 가업을 승계하여야 하고 승계이후 일정기간 이상 고용수준을 잘 유지해야 한다. 기업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된 조건을 법이 명확하게 요구하여야 상속자산간의 과세중립성이 해쳐지는 문제를 무시하고 이러한 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업 상속공제제도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우선 공제에 해당하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로 규정되어서 가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기업을 다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년 안된 기업은 조금 더 기다리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하고 있어서 가업을 승계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 혹은 같이 상속되는지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에 전혀 언급도 없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때문에 자산의 종류별 상속세 취급의 비중립성에 대한 위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는 다루지 않고 있다.

6) 즉 가업이란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가족이 경영하고 가족에게 승계되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이다.

## 6.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번 세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이라고 보여지는 소수의 항목을 찾아보자면 해외세원확보를 위한 제도개정 내용들과 국외전출세 도입 등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의 확대도 바른 방향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에서 기준금액을 소폭 조정하고 그친 것은 점진적 변화도 좋지만 이렇게 까지 소폭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이지만 그저 무한정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조정도 방향은 좋지만 기본적인 비대칭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7. 세부담의 계층별, 기업규모별 귀착에 대한 정부 자료의 문제

정부의 정보독점과 계산근거의 비공개로 인하여 세법개정의 계층별, 기업규모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려는 연구자들에게 정부의 발표자료는 수궁받기 어렵다.

구체적인 항목별 세법개정 내용에서 직관적으로 느끼게되는 귀착효과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서 큰 괴리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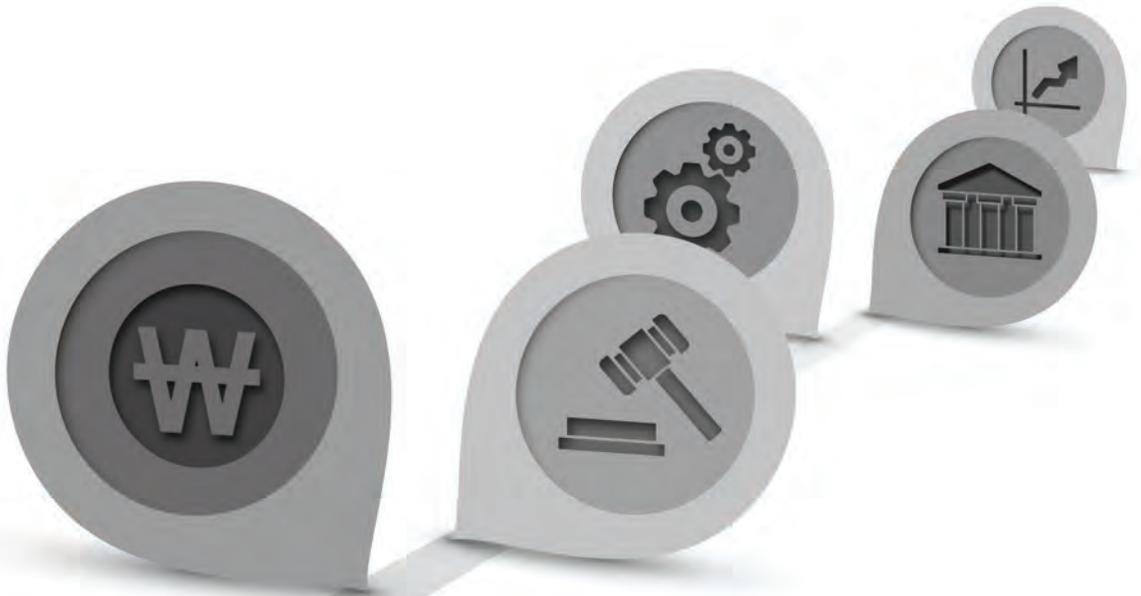
이는 물론 기존재하는 자산가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특혜적 과세의 혜택(저율의 법인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정부의 세부담 귀착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협조를 얻은 뒤 엄밀하게 검증하는 작업을 해보기를 제안한다.

| 조세정책 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회의록





## 1. 개회식

○**사회 김경신** 오늘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님, 사회를 맡아주실 윤성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재정학회를 대표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주시는 최병호 교수님, 토론에 임해 주시는 김우철, 김유찬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과 박용주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여러 의원님, 보좌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우리 경제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투자위축도 되고 또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쉽사리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미치는 그 영향은 실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역시 매년 경제와 이런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올해도 '2016년도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이 정책목표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대로, 제안한대로 각 개정안이 정책목표 달성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세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원 조달 확충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자리매김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토론자, 참석자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김경신** 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국회의장 정세균**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최로

‘2016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내년도 국가의 예산 심의와 더불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국회 예산안심사가 우리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충족하면서 견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또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조선·해운업 등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수경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최근 삼성의 ‘GALAXY Note 3’ 단종 결정 사태 또한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한국은행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2.9%~2.8%로 0.1%P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의 기조와 맞물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지방재정 소요 역시 증가되는 등 재정환경이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를 부

양하고 복지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의 기본은 올바른 과세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과세 기반은 더욱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의 기반이 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조세전략에도 지혜를 모아할 것입니다.

그간 조세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방대한 양의 세법개정안을 일반 국민이 소상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 중 쟁점이 되는 법률안에 대해 소수전문가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학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2016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이 타당한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재정의 건전성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재정과 조세분야에 전문적 의견을 갖춘 여야 의원님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신만큼 올바른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

아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 가지 꼭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우리 국회 예산심의회가 소위 말하는, 국회의장의 지정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서 세법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전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상인데, 마치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서 그것의 찬반만 묻는 것이 정도 인양 논의되는 것은 본질을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본질은 어떻게, 기재위나 다른 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합의되고, 그 합의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느냐 하는 쪽으로 모아져야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도 되지 않고, 검토도 되지 않는 것이 일방통행 하는 것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어떻게든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제 의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을 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 원래의 존립가치 자체를 뒤흔드는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저

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통행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은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김경신** 국회의장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조경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축하말씀을 들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에는 무려 세 분의 여야 3당 의원님들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재 의원님, 박광온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그리고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윤성식 교수님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 주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실장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실 김우철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살림의 근간이자 세입예산의 틀을 마련해 주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지혜와 식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 소위원이신 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을 저하가 우려되고, 향후 재정소요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지에 대해서도 큰 걱정이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을 활발히 발의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6일 ‘법인세율 공청회’ 27일, ‘소득세율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

가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발전에 더욱 발전을 하는 디딤돌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김경신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하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셨다가 바쁜 일정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재정학회 회장님 이신 최병호 회장님의 축하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한국재정학회회장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재정학회 회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세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를 맡아주신 윤성식 교수님

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실현 등 조세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세법개정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제약 하에서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안이 조세정책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세법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세법개정에 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복지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세입확충에 대한 요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법인세세율 인상문제는 이러한 지적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세원을 확충한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정비한다는 정부의 세제정책방향성을 따르지 못한다

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여건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과 정부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절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세제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쟁점들이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됨으로써 금년도 세법개정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김경신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 소개를 다 못 드렸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 모시기 전에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무대가

정리되는 동안 기념촬영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동수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기념 촬영)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무대에 마련된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희 앞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앞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2. 토론회

○사회 윤성식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흔히 세금을 ‘혈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민주주의의 시작을 세중에 제약을 가한 세중에 대한 왕의 권리에 제약을 가한 권리장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가 옛날부터 중요했지만 요즘 특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대한민국의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고를 했던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과 또 밀접하게 파악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지난 9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본방향하에서 총 215 항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서, 개정효과와 또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뜻깊은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일곱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계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는 일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 먼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조세재정분야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 토론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발제,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이어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제 두 분은 각각 15분씩 30분 그리고 토론은 약 한 4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중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을 생각이구요. 자료집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질의서

가 있습니다. 핵심요지를 작성해 주시면, 진행요원이 회수해서 단상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도 밝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영록 세제실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15분 시간을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제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입니다. 금년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의 여건을 보면 먼저 경제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생산 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수출은 9월 누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8% 지금 감소를 했고, 수입은 10%대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매우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외여건을 보면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Brexit) 그다음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어떤 소비의 회복세 그다음에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의 개선, 부동산 주식시장의 호조, 그간의 세입확충 노력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여건이 상당

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지지출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요구도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까지 전년 대비 19조 원이 증가했고, 그 이후에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누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20.8조 원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의 안정 및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입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의 합리화 이 네 가지 파트입니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안입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확대를 해서 현재 29개 분야 125개 기술로 되어 있는 신산업기술을 11대 신산업기술로 전면 개편을 하고 세액공제율로 최대 30%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로 돼 있는데,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비율이 커질수록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서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 증진

기업은 8%, 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일반 R&D 세액공제를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금년도 법인세신고분이 되겠습니다만 R&D 세액공제 자체가 대기업은 엄청 줄었고,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도 더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D를 신산업에 좀 집중을 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이 다 지금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산업의 어떤 성과가 중소기업 등 경제전반에 확산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콘텐츠 진흥세제의 신설입니다. 관광,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큰 산업인 점을 감안해서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R&D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재 7%입니다. 이걸 10%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중견·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할 때에는 5%의 세액공제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차량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400만 원 감면 한도로 해서 감면을 신설해서 전기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법인세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내용입니다. 고용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 투자, R&D 관련 16개 세제 지원제도의 대상을 현재는 서비스업종 중에서 약 60% 정도만 적용받는 것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서비스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지 우대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추가공제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고용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고용비례 추가공제액이 있는데, 그 한도가 현재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걸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국내에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현재 부분 복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요건도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도 확대를 하고자합니다. 그다음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요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에 대해서 현행 감면한도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금액과 고용기준 합계해서 투자금의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고용기준만으로 적용해서 투자금액의 10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수출·소비·활성화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내용입니다.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벤처기업에 출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출자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낼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현재 행사가격기준으로 해서 연간 1억 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걸 3년간 5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설비투자 촉진 지원입니다. 이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이 중소기업한테만 있는데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1년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할 부가세를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만 해 주고 있는 것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이라고 해서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주로 출국장에서 환급을 받는데, 시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기준 구매액이 현재 1회 200만 원입니다. 이걸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내용입니다. 해운업계의 어려움으로 감안해서 현재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톤세제도라 해 가지고 일반기업과는 달리 어떤 표준이익을 선박 톤수에 따른 표준이익을 계산해서 이익과 관계없이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해운기업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상태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톤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활력제고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제한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파트입니다. 서민, 중산층 지원입니다. 먼저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일몰을 3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공제한도를 그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가 일몰이 도래하니까 심층평가를 했는데 심층평가 결과, 이 제도는 어떤 사업자의 과표 형성을 하는 당초 제도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감안을 하되, 다만 이 제도가 근로자의 어떤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3년간 일몰을 연장을 하되, 상대적으로 세 부담 경감혜택이 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가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이고 7,000만 원에서 1억 2,000 사이에 대해서는 2년 후에 한도를 50만 원 줄이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EITC 확대입니다. 2013년에 대폭 개정된 다음에 그동안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1안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재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가구를 차등해서 1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약 10%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7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서민, 중산층 지원내용입니다. 출산, 육아 지원확대 내용입니다.

출산지원을 위해서 현재 출산한 연도에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둘째를 출산할 때는 50만 원, 셋째를 출산할 때는 7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액상형 분류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

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현재 50% 공제를 해 주는데, 이걸 100% 전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부담 경감내용입니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그걸 상환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 대상에 초·중·고 체험학습비 그 수학여행이나 이런 체험학습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비 경감내용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7,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월세를 750만 원까지 해서 10%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고, 현재는 본인이 계약한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현재 월세는 2주택 이하, 2주택 이상 그다음에 전세는 3주택 초과 이상자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과세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내년부터 14%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비과세 하는 특례를 향후 2년간 더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임대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일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도를 당초 저희들이 비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이것이 건보료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서, 만약 이것이 과세가 된다면 어떤 소득세보다는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건보료 체계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할 그럴 필요성 때문에 그 특례를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지원내용입니다. 음식점업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음식점 업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108분의 8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부당한 과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도를 설정하면서 금년 말까지 한도를 좀 우대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우대공제한도를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폐자원,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하는데 그 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에 따른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출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공제율을 우대하고 있는데 그 우대공제율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접대비한도 특례를 2년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고향주택의 연면적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에 증여할 때도 비과세를 하고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파트입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현재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계속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와가지고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기준은 금년 2016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인데 2년 후인 2018년 4월부터는

현행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15억을 초과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금거래업종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중고차구입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허용하고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대상에 3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비과세 감면 축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17%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세율을 19%로 2%p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외전출세 도입입니다. 역외 조세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거주자 즉, 대주주가 주식을 국외에 이민 등으로 전출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양도세를 과세하는 그런 특례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어떤 환류를 통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첫 시행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당초 도입목적대로 어느 정도 그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고용, 임금증가, 배당에 쓰는 방식, 하나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금증가, 배당에 쓰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한 70% 정도가 이 뒤에 방식, 그러니까 투자가

적용되지 않는 고용, 임금증가와 배당에 쓰는 이 B형을 많이 해서 투자제형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환류에 있어가지고는 그 임금증가보다는 배당에 좀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소득 환류가 어떤 투자나 배당보다는 임금증가 쪽에 보다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중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임금증가, 배당 가중치가 1:1:1인데 임금증가부분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해서 1.5로 하고 그 배당에 대해서는 임금증가의 절반수준인 0.8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주주에 대해서 저율로 원천징수를 하면서 종합과세에 대한 주주에 대해서는 20%, 25%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신설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증대 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어떤 임금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적용이 좀 미진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을 초과해서 임금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평균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가산세 부담 그래서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의무라든지 그런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경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횡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다음 가업상속공제제도도 개인법인간의 어떤 과세제도의 일치를 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보완내용은 어떤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가업상속재산이 현재 개인은 사업용자산 전액을 공제하다 보니까 그 부채하고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측면이 있어서 순자산 가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법인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을 처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따르는 의무들이 많습니다. 업종유지라든지 주식처분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제한의무는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조정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청정발전연료와 형평을 감안해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전유연탄에 대해서 LNG의 절반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걸 당초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사업용토지제도 개선입니다. 작년 국회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면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결효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토지 취득일로 기산일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익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라서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249억 원입니다. 그 증가요인은 발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조정 등이 되었고, 감소요인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세제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귀착을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7338억 원의 세부담 증가가 있고 서민, 중산

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813억 원의 세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법개정 효과가 이렇게 3249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일몰 도래한 가면을 보면, 전체 건수가 이 25건의 금액이 3.1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일몰에 도래한 가면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신용카드 공제가 1.9조 원, 그다음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600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세법개정을 잘 지향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장기 조세정책의 대내외여건은 성장률 둔화 그다음에 노년인구부양의 부담 증가, 사회보장지출의 급증, 통일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지출 소요가 대내적으로 있고, 대외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증장기 조세정책방향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한다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중기 조세부담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해 가지고 2020년에는 277.2조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 숫자가 232.7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까지 이 추경 대비해서 벌써 상당 조금 초과되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그 중기 조세부담률이 현

재 18.9%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8.9%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세수증가추세 이런 걸 보게 되면 18.9%를 훨씬 상회할 그럴 수준에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가장 높은 적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19.6%입니다. 19.6%도 일부 좀 이렇게 예외적인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말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세수가 이 월됐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 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연간 한 19.3% 정도가 역대 최고 조세부담률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역대 최고 조세부담률에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아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지 15분으로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기존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정책처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님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15분을 지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발제자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박용주입니다. 최영록 실장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세 세제개편을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민생의 안정을 또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추구하고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한 215건의 조세개정조항을 가져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나 그 실효성 면에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가 가장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조세라는 것은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또 소득도 제대로 분배를 하고, 성장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세의 재원조달기능입니다. 국가재정이 모자란 다음에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조달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아까 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수효과는 약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에 매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제개편안을 통해가지고 한 1조 6000억 정도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좀 소극적인 개혁을 하셨다. 또 특히나 대부분이 기존 제도에 좀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좀 소극적인 개정을 계속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조세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 수 있는 근로자 면세자가 48%라는 문제, 다 각 당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해법을 가져오지 못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그러한 큰 변화, 그 다음 2014년도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고요. 2015년도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억하시겠지만 개인종합과세 통장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빠져 있어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년 세제를 개편해 가지고 민간한테 안 좋은 예측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재원조달 즉, 국가재정의 조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의 비과세 감면 정비가 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한 3조 원 정도의 비과세 감면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1,000억 원, 2015년도에도 또 1,00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26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심층평가를 통해서 신중하게 한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조세지출이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아까 우리 최영록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폐지된 건 4개에 불과하지만 또 감면제도가 5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신성장기술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장기주택 임대, 부동산 그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결과적으로 5개의 새로운 조세감면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향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세제개편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가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습니다. 내후년도부터는 우리나라가 노령사회에 진입됩니다. 노령사회라는 것은

14%, 65세 인구가 전체의 14%가 되는 노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 재정사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수출을 주로 해 가지고 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또 그게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세수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또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는 데는 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향후에 재정건전성은 지속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장기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과연 안정적인가에 관한 장기전망을 내놨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파란색표입니다. 이 파란색표는 뭐냐면 지금 같은 조세부담률을 갖고서 또 지금 같은 복지제도와 지출구조를 유지하면서 죽 보니까 206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는 151%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151%에 달할 수밖에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불과하지만 향후에 지금 제도만 유지돼도 그대로 더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2060년에 가게 되면 150%라는 상당히 막대한 국가채무를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OECD 기준하고 많이 저희가 비교하는데요, OECD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 노령비율이 12.7%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의 조세부담률이 24%였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18%였습니다. 지금 OECD의 조세부담률이 26%고, 물론 그거랑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좀 노령화됨에 따라서 맞춰간다면 최소한 저희는 4%p 정도를 올려야지만 사실상은 100%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100% 이하로 갖추려

면 최소한 4%P 정도의 조세부담률은 좀 상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총평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세수입을 보시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저희 처의 계산으로는 244조 원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7.2조 원 정도 증가했고, 또 정부에서 했던 거보다도 한 2.5조 원 정도 많게 지금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에 국세수입이 좋았고, 내년에도 사실상 국세수입이 좋을 전망입니다.

다만 증가추세는 올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8.8%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한 3.0% 증가폭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도 추정 전까지는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국세수입이 부족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쪽에서 상당히 현실화시키면서 작년도, 올해 좀 좋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경기하고는 상관없는 좀 이상한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국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많이 했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시장이 좋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자산 관련 세제, 부동산이나 자산 관련 세제가 전체 국세의 한 9% 차지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세에서 한 1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 세제가. 사실상 이것은 경기하고 조금 유리된, 괴리된 어떤 부동산의 일시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수입이 정부의 예상보다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정부 세수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가 없습

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에 두고 있고요. 또 유가도 사실상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고요. 또 법인수익이 최근에 삼성이나 현대 사태를 보면 계속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내수의 여력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난망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국세수입의 증가호조를 잘못 인식해 가지고 재정을 확대할 경우 향후에는 소위 말하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확대돼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최근의 경제 재정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의 적자가 매년 20조 가까이 20, 30조가 납니다. 매년 20, 30조가 모자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이에 따라서 한 40조, 50조 정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이자만 해도 매년 한 20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가계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좀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국가채무 순증이라는 것이 매년 약 22조, 46조, 43조, 57조, 50조, 47조, 44조. 한 4-50조를 매년 국가 채무를 새로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정부의 소득세,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최 실장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을 연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소득

세,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1999년도에 우리나라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도입했습니다. OECD에서도 이거 참 잘 한 일이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미 당초에 정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과거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한 38%밖에 안 됐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 정책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이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이제 아직까지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고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번엔 것은 뭐냐면 고소득층에 축소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고소득층에 대한 것이 조세지출감면액이 한 959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효과는 좀 많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향후에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번에 중요한 것이 주택임대소득 지원세제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지원세제는 지난 2014년도에 비과세기간을 좀 2018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리고 저효율과세가 이제 연장함으로써 이번에 개정안을 따라서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저율분리과세를 유예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걸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및 조항까지는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좀 잘사는 5분위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분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19%밖에 안 되고, 5분위 이상은 한 절반인 55%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시면 생활형 임대인 보다는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임대인에게 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이것을 부정을 할 경우에는 월세값이 오른다든지 전세값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전에 좀 과세당국에서 임대차정보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서 좀 안정화 조치를 세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주주에 한해서 내고 있는데, 이 대주주기준을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낮춰와 가지고 이번에도 좀더 낮춘다는 말씀이신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지분율기준입니다. 지분율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회사도 있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한 200조 넘는 기업도 있지만 또 조그만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24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지분율만 따지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많은 수익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동일규모의 거래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의 주주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삭제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인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법인세도 새롭게 많은 항목들이 들어왔는데 다만, 조세의 지원규모가 크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영상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산업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인세라는 게 수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공제돼 있는 거고. 그런데 망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지원해 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R&D라든지 이런 것들이 high-risk 산업이고 망할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돈을 버는 기업들한테만 이런 세제혜택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그걸 원해요. 지난번에 전경련이 조사한 걸 보니까 많은 기업이 조세지원보다는 사실 돈을 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특별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최근 들어온 것은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R&D 공제를 좀 많이 해 주겠다는 말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신성장 R&D 공제액이 일반적인 R&D보다는 사실상 더 많은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왜냐면 이게 따로 하려면 회계를 다시 구분해야 돼요. 일반 R&D 그다음에 그런 특수한 신성장 R&D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쫓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라는 것은 2014년도에 도입할 때 저희가 기업 사내유보금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직접 하지 않고, 기업에서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임금을 늘리면 세금을 면제시키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했는데, 그때부터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기업은 절대로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환경이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임금 늘리지 않습니다. 결국 배당만 늘려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그 우려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같은 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박용주 실장님,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의 근본적인 방향은 옳지만 미흡한 게 있다. 재원조달의 역할이 특히 미흡하고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대응이다. 그래서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각 토론자에게서 8분씩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이현재**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예산정책처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우리 세제. 우리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곧 국민의 부담으로 가니까 적절하게 쓸 규모를 걷는다는 것이 참 매

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 우리 실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 세제개편 논의를 추가로 보완해야 된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출규모가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서 세입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주로 75% 차지하니까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을 조정할 거냐.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소득세에 있어서 면세제가 48% 절반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터치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제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법인세에 관해서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 나와 계신데, ‘법인세인상안’이 지금 제안이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제안돼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구상에서 아마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논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계속 내려서 우리나라가 22% 우리 경쟁인 싱가포르 같은 데는 17%, 중국도 30에서 25로 내려왔고, 이렇게 죽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의 편익, 수익증진을 해 나가자는 것이 큰 방향인데, 우리만 그런 면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걷기 쉬우니까 돈 더 버니까 더 내라는 그런 논리가 잘못하면 경제를 위축하는 것 아니겠

느냐. 결국 법인세를 늘리게 되면 투자와 고용이 줄게 되고 서민, 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국민증세나 서민증세로 갈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나라별로 복지수요가 가장 우리가 세출 중에 많이 들어가는 게 복지수요인데, 복지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는 것은 여러 가지, 나라마다 틀립니다. 구라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주로 저부담을 하되, 연금 민간보험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출구조조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과 어떤 공론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감면조항을 많이 폐지하고 해서 지금 연간 4조 8000억이 지금 더 걷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3% 법인세가 인상될 때는 아마 지금 4조 8000억 플러스 또 아마 추가 3%p 인상하면 3조 5000억이 더 걷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4조 8000억에 3조 5000억을 추가로 더 내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세수를 보면, 작년보다 20.8조 8월 현재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세가 7조 더 걷히거든요. 7조 더 걷히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각종 감면조항을 폐지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다.

그런데 우리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 금년에서 매출이 줍니다. 아니, 재작년 2014년, 2015년. 2014년에는 전체 매출이 1.9%. 작년에는 4.2%인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제조업 매

출이 줄었습니다. 대기업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형흑자가 돼 합리화경영을 해서 결국 수익은 늘지만 전체 축소지향으로 가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이 법인세문제는 우리 경제활성화를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가 구조조정문제 또 삼성전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내년도 한은도 이제 경제전망을 또 하향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조금 전에 계시던 재정학회 회장님도 우선 증세에는 경제활성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할 거냐. 그리고 세원확대는 꼭 필요하면 국민 공감대를 통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 나라 살림을 어떻게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정부 안은 대체적으로 우리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든지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그러한 세제개편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대기업, 고소득자중심의 세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큰 틀에서는 균형 잡힌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투자·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다든지 고용·창출투자 세액지원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착된 그러한 개정과제들을 발굴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문제라든지 저출산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투자 리스크가 큰 고위험을 수반한 신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대기업 핵심기술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연관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제도(EITC)와 관련하여 적용기준, 지원금액을 상향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청년일자리 등 고용과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문제니까 보다 더 전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U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가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U턴을 시켜서 미국 경제를 살렸고, 영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국 기업을 유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외국에 나가서 한 10년 이상 있었다 한 기업은 사실은 외국 기업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그치지 않고, 이 대기업도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그간 배당 임금투자를 공히 3분의 1씩 했던 것을 임금배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뒤서 이렇게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세수 증대가 지금 현재 3249억 플러스 세법개정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세법개정안은 추가로 좀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이현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정부의 개정안은 균형 잡힌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청년일자리 등 고용과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또 U턴기업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수기반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매우 뜨거운 주제입니다. 법인세문제는 만약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면 오히려 투자가 축소돼서 국민에게 그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면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경우 최후수단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또 박광온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최영록 실장님, 박용주 실장님 또 토론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노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을 지금 앞에 맞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돼서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의 성장동력을 더욱 더 소진시킬 것이고, 고갈시킬 것이고, 그것이 점점 더 저성장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한 정말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번 '2016년 정부세법개정안'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소득은 늘는데, 부의 이전부담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년간 소득 상위 10%가 이자와 배당소득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종합부동산보유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노력이 어떻게 든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OECD 회원국의 경우는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제도를 통해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개선되는 비율이 35%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조세제도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더 심화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제 세법개정의 핵심방향으로 조세 본래의 기능을 이제 회복하고, 재정건전성이 매우 이제 중요,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소득자중심으로 조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인세와 소

득세의 부담형평성을 제고하고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세법은 여전히 재벌 대기업 지원위주의 세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효과는 대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정책처도 박근혜정부 실제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당초 공약 가계부상의 18조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3조 원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업을 87%를 차지합니다. 부자 감세, 재벌 감세혜택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니계수를 우리 정부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통계청이 0.295다. 그럼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대체로 0.3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0.42599고 거기에서 자산, 순자산 지니계수로 하면 0.6%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심각한 불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빈곤율을 낮추고 또 서민, 중산층의 패자부활자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 이 기초를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의 책임성이 더욱 더 이제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입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복지제도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9.1%입니다. OECD 평균 21.7%인데,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값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국민부담률 역시 25.9%인데 OECD는 34%입니다. 그러니까 10%가량 낮죠.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 당과 함께 발표를 했는데 5년간 증여 받은 미성년자가 26,000명인데 평균 1억 2000만 원입니다. 실효세율은 20%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는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상속 받은 사람의 2%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가 48%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연 20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든요. 610명이 5년간 주식으로 20조 원을 취득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주식양도차액은 대표적인 자본이득의 편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위 10%가 이자소득의 91%, 배당소득의 94%, 종합부동산세 87%, 양도소득의 83%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법을, 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주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능적인 분야의 세법만 논의한다면 정말로 저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선 법인세를 왜 중시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본소득이라든지 증여세, 상속세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법들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

가장 상징적으로 첫발을 떼어야 될, 첫 단추를 꿰어야 될 세금이 저는 법인세라고 봅니다. 법인세에 저희들이 과표 500억 원으로 인상해 기업에 3%를 옛날로 돌리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리기 전인 25%P로 돌리자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0.04%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440개 정도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그 기업들은 지금 많은 이윤을 올리면서도 고용을 안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고용을 안 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계속 법인세를 깎아주고 R&D 감면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세 5억 이상 과표구간을 뒤서 41% 세율을 적용하자. 현재는 1.5억 이상 38%로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과표구간을 하나 더 두자는 겁니다.

우리 당이 세법심사를 하면서 지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상향조정한다,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고소득, 법인, 그다음에 고소득개인이 우선 부담한다. 중산층, 서민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 부담이 적정인가 다시 살펴보고 경감할 부분이 있으면 경감한다. 그렇게 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그분들이 바닥에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내수를 진작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올리자고 얘기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유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되돌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낮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높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들의 소득이 그만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격차가 커져 가짜 법인들은 많이 만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특정인들, 가족법인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감면받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소득이.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법인세정상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우리 다 당의 세법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 자료에 죽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본이득과세 강화하고 부동산임대 자산소득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세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과세 미달자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고, 소득세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장려금, 근로장려금 또 영세자영업자 부가세납부의무 면제제도 상향 그다음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제도 도입 또 월세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확대, 여성·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박광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하자면, 한국 경제는 빨간 불이다. 악순환의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양극화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데 특히 이제 법인세가 대기업재벌 우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인상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수준을 복원하는 거다.

그리고 또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또 소득세의 과표구간 신설에 대한 말씀 또 그러나 중산층하고 임금노동자는 세부담을 낮춰서 소비를 진작하도록 하자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8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박주현**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정부정책의 객관화, 과학화에 지금까지 많이 기여해 오신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금 세 가지 요소 소비, 수출, 투자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진작, 총소비, 총수요 진작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법인세인하를 통한 투자증가는 이미 이제 실패가 됐고요. 그리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외국소비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HRD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이고. 이미 R&D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세액공제 플러스 2.5조까지 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소비진작을 위해서 그동안 금리인하, 양적완

화, 부동산 경기부양 이런 거 했지만 결국은 가계 부채 1300조와 양극화 심화라는 그런 쓰디쓴 부작용만 남기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총소비, 총수요 증대책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평균 소비성향이 1분위는 130이고 10분위는 60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층에 돈이 갈수록 총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산과 정책이 소득재분배에 적어도 단기간 총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입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 결국 IMF를 비롯한 OECD 모든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편견을 깨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저는 경제가 이대로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적자 38조 내지 39조 올해 적자 28조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재부가 그동안 재정건전성과 금과옥조처럼 생각을 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 담배세로 3조 원 이상 증세를 했으니, 이제 소득세에서의 조세감면제도 정비 그리고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약 10조 정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책임한 기재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일몰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몰 3년을 원칙적으로 다 만들겠다고 작

년 조세기본계획에서 분명히 밝히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액이 절반에 이릅니다. 그거는 올해 조세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것 중에 거의 없애지 않고, 조세감명정비가 26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나마 기재부가 지금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에 지금 반해서 U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을 붙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일몰이 도래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리고 붙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일괄 일단 3년 일몰을 붙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이제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일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이제 더 이상 세수증대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수가 지금 부가세 쪽에서까지 하면 한 3조 몇 천억이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수료부담을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이 부분은 아직 그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몰이 되는 거에 임대소득비과세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비과세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2014년부터 기재부가 그걸 내놨는데, 거기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붙였잖아요. 60% 필요 경비도 공제하고 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400만 원 공제를 해 주고 또 일몰기간도 또 1년 연장을 하면서 온갖 그런 걸 했는데, 또 다시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정부의 신뢰문제가 간다고 생각하고

요. 국세청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전월세 자료를 다 이미 확보해서, 3년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이거 비과세 일몰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이거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해 줄 때도 분명히 임대소득 과세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일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정말 20년 전, 30년 전에 만연히 저축을 장려하던 시대 그리고 뭔가 보험을 장려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비과세와 감면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일몰이 아니니까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무 문제제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돼온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험료세액공제 그래서 민간보험에 대한 그런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세수감소가 8300억이나 돼요.

그리고 '장기저축성보험'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저축성보험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2억 이상에 대해서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해 주는 게 643억이 지금 세수감소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래서 400만 원 그거 연금계좌 하면 12% 정도의 정부가 이자를 주는 방식이 사실상 되고 있는 이걸로 해서 9100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 수협 출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게 7600억인데, 이 중에 지금 준조합원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88%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도 들여다보지.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장기계약보험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니냐.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 스스로의 어떤 노후보장을 위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보험에서 누락되고 있는 거는 2분위에서 4분위까지입니다. 여기가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서 여기에서 누락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저축성 관련 비과세혜택을 받는 거는 거의 6분위, 7분위, 8분위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저축률이 한 35% 되는데, OECD 평균적으로 한 2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소비를 늘려야 될 때 저축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닌데, 이 저축에 대한 각종 비과세 이런 것들이 일몰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부분을 과감히 다 정리를 하시면 저는 이 부분에서 한 3조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이너스 28조에서 지금 3조는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 이거 전부다 좀 털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만 하면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내지 40%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또 10% 그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려 액수가 5000억 가까이 됩니다. 4800억이에요.

그리고 국세청도 지금 3년째 계속 이거 없어도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미환류소득 과세대상 45개 법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1년 간의 인건비는 겨우 5% 늘었고, 투자는 1% 줄었고, 배당은 105%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문제 다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리. 그러니까 배당부분이 빠져야

비로소 기업이 아, 이거를 임금과 투자로 가겠다고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에 대해서 지금 지난 8년 간에 한도 1억에서 500억으로 500배가 늘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오래오래 내려오는 가업의 강소기업을 계속 살리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게 지금은 그냥 기간을 10년만 어떤 기업을 하고 있으면 500억 한도 내에서 거의 모든 기업이 그 상속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도, 이상한 괴물 같은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8년 전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매출이 줄었는데 세수가 늘었다 그러는데, 매출, 이익이 생겼으니까 법인세를 냈겠죠. 그래서 매출이 줄었다는 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실효세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 한국은행 계정에 기업소득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비슷하게 쓰고 있고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기업 소득 대비 법인 세수비중이 우리가 지금 최근 계속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 12.6%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같은 비교를 OECD하고 해 보니까 OECD의 경우에는 15.6%였거든요.

그래서 전체 GDP 대비 기업소득이 많아서 법인 세수비중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기업이 자기들이 얻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는 세수를 지금 계속 점점 더 적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명박정부에서 어쨌든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이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그걸 감세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몇 년 동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 거면 돌려달라라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받

아서 다시 이명박 시대로 그 감세 이전으로 돌아갈 때 이제 제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7.6조가 증세가 됩니다. 그 부분을 받고 조세 감면해서 일정 부분을 해서 10조 남짓의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4년 간 평균 1.66조 원을 이제 세수증대 하는 안을 계속 제출해 오다가 올해는 3200억 원 늘어나는 지금 세수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문가, 정부, 기재부와 전문가는 정확히 수치의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소야대에서 이 부분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부가 제출한 그 세제개편안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이 보완되는 그러한 조세소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서 총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적자를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조세 감면에 대해서 일몰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계속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임대, 소득과세, 보험, 저축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소득에 비해서는 여전히 세수가 적으니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았더라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다시 옛날로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제가 사회자로

서 빨리 끝내주시라고 메모를 돌렸는데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통했는데,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너무 기다리는 것도 죄송해서.

일단 김우철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 두 분 남으셨는데 최대한 8분씩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김우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김우철 짧게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NABO의 발표에서 충분히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면 매우 소폭의 변화고요. 특별히 강조할 게 없다는 게 이번의 특징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감면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일부 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이나 또 국외 전출세 이런 형태로 세수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억 세수증가는 유효숫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걸 보고 거의 그대로 간다 이렇게 세수는.

아마도 올해에 이제 법인세가 정상화되거나 또 담배세 수입 너무 늘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두고 더 추가적인 어떤 증세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은 이제 불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재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일단 1년 반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해 봐야 정확하게 행정부나 이런 입장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례적인 세법개정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과세 감면조치를 손보는 거거든요. 조금 일몰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조금 축소·확대 하든지 유지하든지 아니면 신설인데요. 이

번도 역시 그랬다.

그래서 25개 중에 4개만 이제 일몰 종료시켰다고 NABO 분석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정말 입장인지, 비과세감면의 전면적인 정비를 이번 정부 초기에 내걸었는데, 결국 구두선에 끝나는 거고 또 많은 성과관리제도를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 실현한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그 제도의 실효성은 확인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물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case-by-case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감면제도를 죽일지 살릴지를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전면적이고도 일괄적인 개편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제가 관심을 기울인 점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향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정부는 소규모 주택사업자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자에 대해서는 2년을 더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 배경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세를 전가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게 소득세부담보다도 건보료부담이 더 높아서 지금 조세저항이 세다. 3년 내내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뭐 하러 이번 정부 2014년 초에 그렇게 시끄럽게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지 묻고 싶어요. 전가의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남는 문제고, 건보료문제는 물론 잘못됐죠. 고쳐야죠. 하지만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고치겠다고 하고, 또 전면 스스로 자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은 다른 제도의 탓을 해서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러면 왜 그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가면서까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를 외쳤느냐. 그런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결국은 조세정의의 악화시키고 납세조항을 더욱 더 추후에 증가시키는 조치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유예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럼 보강해서 이 제도를 우리가 실현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복안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월세 세입자들의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소득공제를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준비과정을 보여야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과세를 시작한다고 해서 과세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무행정, 조세행정 차원에서 과세자료라든지 등록이 안 된다면 이제 신고방식을 어떻게 강화할지라든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속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정 유예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미 2014년 말에 통과된 당시에 세법, 임대소득에 대한 그 과세안이 상당히 약화된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먼데,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소득이니까 종합과세가 우선이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분리과세로 하는 것도 좀 사실은 손을 봐야 되는 문제고, 주택수하고 임대소득과세는 사실 큰 연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많고 적고냐가 문제이지 주택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제도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손도 봐야 되고.

또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를 하거나 저효율로 과세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근거냐.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주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하는 겁니

다, 종합과세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전범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악화된 임대소득 과세도 사실은 좀 더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물론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아까 의장님 말씀 중에 예산부수법안 이야기 나왔는데, 아마 법인세 인상안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대체로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 법인세 인상안은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분배,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서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미 소득세 세액공제 전환, 담배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세금은 다 올렸는데 왜 법인만 이렇게 지키느냐. 저는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법인세 논의를 갖고 좀더 양보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절대 올려서 안 된다는 것도 틀렸고요. 반드시 올리기만 하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진다는 그런 과장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세원을 올린 상황에서 상당한 복지재원이 지금 나왔고, 그렇다면 개혁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죠.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가 상당히 해로운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분담을 어떻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가 3% 정도 더 높았던 시기에 또 조세부담률이 19.3%였던 시기에 그때 우리 복지가 높은 수준이었습니까? 우리 소득재분배가 아주 원활히 아주 잘 작동했습니까? 법인세율의 3% 인상이 이 사회의 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부터 강조하고 싶고. 세율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특히 법인세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정 재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야당에서 원하는 재원은 대략 3, 4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3, 4년간 세법개정에 의해서 늘어난 법인 기업의 부담이 대략 4조 7,00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 이제 실현된 건 아니지만요. 지방 법인세형태나 재산세 등의 인상이 있었고, 국세법인세 증가도 있었는데, 대략 3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후년까지는 다 국세수입으로 증가가 연결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법인의 세부담을 더 늘려야 될 것인가 먼저. 제가 볼 때는 맥시мум이 2조에서 3조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의 세수 증가를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그 방법은 굳이 우리가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이걸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법인세를 누진으로 해 봐야 전혀 소득재분배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다단계 세율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의 대기업위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특히 이제 R&D 감면이나 많이 없애긴 했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힘들지만 좀더 줄여볼 수 있겠다. 이런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법인세인상 논의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직접적인 재분배효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이미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세율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소득재분배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모든 차원이 결국 우리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인데, 이 원칙은 결국은 일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채무 증가나 이런 걸 통할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입확충이 절실한데, 방법도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물론 제고하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현재 방식은 자신의 정상적인 수익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과세하는게 필요합니다. 흔히 rent-seeking 행위에 대한 과세중심으로 가야 된다.

rent-seeking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임대소득이 고요. 또 불완전경쟁이 심한 독과점구조체제 하에서 재벌, 재벌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시장 지배자의 어떤 과도한 수익인 겁니다. 그거를 너무 법인세율로만 정상화할 게 아니라 어떤 초과이윤에 대한 세부담을 좀 올리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박주현 의원께서 얘기했던 금융소득과세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증세의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너무 법인세중심으로 우리가 과도한 논쟁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일단 재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특히 임대소득 비과세 등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세문 제도 앞에 나온 두 가지 의견과 약간은 다른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같은 대기업위주, 그런 것을 건드리면 오히려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 자동적으로 소득재분배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과이

윤에 대한 즉, 비정상적인 이윤에 대한 공평과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찬 교수님 꼭 8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김유찬 8분 동안,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자료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토론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저의 의견을 덧붙이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먼저 현재시점에 이제 국가재정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세제개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제도가 세제개편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조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짚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자본 친화적 세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박광온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이제 우리가 소득세공제제도를 통해서 가지는 가족 및 자녀에 대해서 사실은 적대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세제가 근로소득공제액이 굉장히 높죠. 이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소득자의 과표 양성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한데, 이런 근로소득공제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공제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점이 충분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리 다 큰 몫의 공제를 해 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숫자가 많아도 그거에 비례해서 공제액수가 높아지지 못하는, 결국 OECD 전체적인, 평균적인 국가들의 제도에 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고, 가족이 많은 사람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가족 적대적인 세제다.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시대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하고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로서는 소득계층별 조세정책의 불연속성인데요. 이 문제도 박주현 의원께서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에 세 가지 제가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2016년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를 해 보자면 그것이 매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미 2016년 하반기에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두 번째 추경안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우리 예산안의 수준이 3.7%라는 지출증가라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사실은 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입 확보는 우리가 그보다 높은 6.0%의 우리가 세입에

산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상당한 우발적인 세수증가에 기대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적극적인 세수증가를 위한 노력이 이제 거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앞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담배소비세 얘기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정부가 1월에서 8월까지 올해 세입실적, 징수실적을 이제 국세청이 발표한 걸 보면 그 중에 법인세도 상당부분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우리 자료에서 김우철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정부의 발표에서는 상당한 최저한세 인상을 통한 그리고 조세감면 축소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효과가 이제 천천히 법인세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최저한세라는 것이 우리 아시다시피 17%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17%라는 게 우리 실효세율에 딱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현재.

게다가 최저한세에는 상당히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한세에 저축이 안 되는,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조세감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법인이 세금을 더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것은 전적으로 세제실에서 한 발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제실이 얘기하는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가 사실은 제가 자료의 제일 마지막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적절치 않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실제로 자산가들을 위한 그런 세제개편인데, 세수효과는 자산가들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그런 뒤에 항상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정

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수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거 말고도 앞에 우리 박용주 실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법인세가 이번에 늘어나게 나타난 이유는 국세청이 상당한 세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그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 유가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축소 이런 것의 효과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요. 조세감면제도가 매년 우리가 세계개편내용을 봤지만 조세감면이 몇 개를 줄이고, 몇 개를 늘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서 법인의 법인세수가 늘었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좀 간략하게 줄이고, 뒤에 개별적인 조항에 대한 의견에서는 이제 임대소득 관련 세제하고 중요시하게 본 것은 저는 기업공제 관련 감면 관련 세제 특히 이제 R&D 액수에 대한 상향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세계개편이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더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만 드리고. 하나만 제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실 법인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따로 사실은 시간을 마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 좀 토론을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현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김우철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결국 법인세라는 것이 경제활성화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을 법인세하고 경제활성화하고 사실은 관련이 안 되더라. 연구를 해보니까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또 우리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별적인 그 안의 그 논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저축이 되니,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것을 저는 항상 이제 토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덜 내면 외국 자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덜 내면 외국 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외국세액공제액을 넣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외국세액공제액이 큰 규모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낸 것이 아니라 외국에게 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실효세율 계산할 때 많으냐 얘가지. 우리나라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은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이제 외국자본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우리나라에서 세율은, 세금을 덜 내는데, 그 투자자는 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에게는 아무 도움을 못 주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의 세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면 그런 국제적인 이중 과세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그런 체제 하에서 외국 자본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고요.

국내자본에 대해서 그럼 다르지 않느냐. 우리나라 국내자본은 그러면 국내에서 있으니까 외국에 안 나가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법인세가 경제활성화랑 상관이 없다. 투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다가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옮겼다가 또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옮기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생산거점을 옮기는 것이 법인세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베트남에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투자하고 사실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 어떤 회사가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학에서 소위 얘기할 때 ‘절대적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고, ‘차별적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재정학의 원론의 개념이죠.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올리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이 당사자들에게 혹은 누구에게나 안 좋죠, 여하튼.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결정의 준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지금 같이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고 그럼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세금이 나와야 되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어디냐. 그리고 경제에 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냐

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찾는 것이 우리가 ‘차별적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이현재 의원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건 영향이.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세금을 걷으면 투자 안 좋다. 그런데 조금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안 좋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인부분이 제일 세금을 덜 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산소득분야, 임대소득얘기도 나왔고, 또 금융소득분야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분야에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해서 낮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도 상대로 적게 해치고 형평성도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이라도 안 좋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세수입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런 말씀.

그리고 임대소득 비과세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법인세의 문제 결국은 상대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가장 법인세가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경제활성화와 무관하다는 견해도 아울러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두 분 발제자님께서서는 하실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최대한 억제하시고 그냥 2분씩 최영록 실장님, 박용주 실장님. 일단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2분이 되면 제가 마이크를 두들기겠습니다. 그때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 최영록**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의 어떤 재원조달기능이 약하다. 그다음에 소극적 세제 개편이다.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틀 안에서 하고 있고, 그 세입의 확충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어떤 그런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하고 이제 박주현 의원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고, 이제 세법개정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세소위 세법심의과정에서 이제 많은 토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신 전체 중에서 토론의 어떤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지니계수가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어떤 지니계수의 산정의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다음 감면이 6.3조밖에 안 됐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세가 감면 축소를 한 거 아니냐.

최대한 재산세를 올린 거는 감면축소를 했다는데, 그 감면 줄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많은 논쟁이 되어 왔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세율을 낮췄지만 그만큼 감면을 줄여가지고 이미 실효세율을 2% 올렸다. 그래서 정상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로 계속 세율도 올리고 세액공제도 전환하고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편중이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어떤 소득세의 세부담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어떤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과세체계 전반을 함께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다음 박주현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제언을 주셨는데, 일몰 다 만들라는 의견, 그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 의견을 주셨는데, 일몰은 사실 두고 있지만 이제 안 두는 부분이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여러 가지 소득공제들 그다음에 R&D 지원, 주로 이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소득, 세법상의 어떤 그런 감면이 상당히 비중이 큼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라든지 또 임의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면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속증세신고세액공제라든지 기업상속공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상속과정에서 근로자의 어떤 고용안정 이런 측면을 봐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

고,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현재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에서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는 게 '이율과세제도'라 해 가지고 OECD 국가 중 12개의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했는데, 그 자본이득과세를 저희들이 가업상속공제부분에 대해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소득 관련해서 이제 법인과세비중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지만, 어떤 기업소득 자체가 국민 계정상 기업소득 자체가 어떤 세부담의 적정성을 비교하는 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주 실장님.

○발제자 박용주 오늘 토론회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또 교수님들 간에 개별적인 의견은 달랐으나 다 필요, 다 공감하시는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세개편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제개혁 각 항목으로 들어가면 100인이면 100색 다 다릅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수업시간에 배운 거는 뭐냐면 조세저항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조세부담입니다. 자기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조세부담입니다. 뭐냐면 나는 많이 내는데 옆에 사람은 안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세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일소득에 대해서 다 세율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

득이나,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에 따라서 똑같이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다 다른 세율을 매깁니다. 이걸 공평과세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절대적 조세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정부에서 해 준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운영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공평한 조세부담을 이룬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 가지고 조세저항이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셉니다, 조세저항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농담입니다만 '혈세'라는 말이 아까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혈세'라는 말이.

○토론자 박주현 일본도 없고

○발제자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없고 중국말이에요. 그게 한문인데,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쓰는 유일한 말이 '혈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히나 조세저항이 심한 mentality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 조세부담과 상대적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이제 그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을 차례인데요. 저한테 전달된 건 하나인데 그냥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청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과세 하는 게 맞는데, 비과세보다는 어차피 과세를 해야 된다면

비과세보다는 감면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한다면 감면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임대인상률에 대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세대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유연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부분 굉장히 좋은 건데요. 현재에도 이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좀 과세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LNG 세율은 좀 인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사족 같은데요. 2012년도 우리 국가채무가 420조에서 작년도 2015년도 말에 590.5조로 매년 10%씩 증가해서 2012년 대비 2015년도가 국가채무가 40% 증가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33년도에 재정 bankruptcy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좀 줄이고, 재정증세를 좀 유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윤성식** 이 질문은 아마 세제실장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청중 유동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석탄화력이 작년도에 올해 작년 대비 2%가 증가하고 있고요. 원자력이 3%가 증가하여서 지금 현재 거의 70%의 발전을 원자력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을 유도하려면 원자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 최영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비과세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원래가 이제 분리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신 말씀은 일단 과세를 하되 감면하는 방식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신고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청중 유동수** ... 하시고요. 감면은 안 되니까.

○**발제자 최영록** 아니요. 이제 감면하더라도.

○**청중 유동수**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감면 안 되잖아요. 감면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년 후에도 이게 일몰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발제자 최영록** 일단 효과 면에서는 비과세나 감면이나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어떤 세금포착 그런 걸 주셨는데, 결국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청중 유동수** 비과세 되는 것보다는 감면 받아서 세금 안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 최영록**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아까 원자력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과거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하는 거는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개별소비세 과세를 도입을 했고, 저희가 또 LNG와의 형평을 감안해 가지고 절반까지 올라왔는데, 그 원자력은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에서도 거의 과세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방세 쪽에서 약간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이 증가해 가

지고. 또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좀 장기과제로 일단 그렇게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LNG 쪽은 이제 발전부분은 빼고 나머지 LNG는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 유동수** LNG 발전세율이 40%미만이거든요. 원가를 회복시키려면 과세를 인하해야지 맞습니다.

○**발제자 최영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기 수요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전기 발전연료 간의 형평성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쪽은 저희들이 감면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 윤성식**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여기서 중단하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 안은 3당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합의가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 나와 주신 3당의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딱 좀 2분해서 6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토론자 이현재** 새누리당 이현재입니다. 토론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멘트를 주신 의원님들께 간단 간단하게 제가 사실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 빨간불이다.’ 맞습니다. 빨간불인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증세를 한다든지 무리한 증세를 할 때는 문제가 많다. 우리 빨간불의 증세로 경제상황을, 우리 수출이 이제 19개월째 마이너스 됐다가 20개월째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구조조정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지나친 증세는 경기위축 그리고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축소로 경기위축으로 이렇

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제 세를 좀 많이 인상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상위 1%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세금 부담이 42%입니다. 상위 10%가 7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면세자 48% 말씀 주셨는데, 면세자 48% 근로소득 되시는 분들은 물론 과표가 2000만 원 이하 되는 분도 있지만, 각종 감면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분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 고용이 줄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8년 동안 30대 기업 통계를 보면 과거처럼 많이 고용이 늘은 건 아니지만 평균고용이 5.2% 증가를 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으로 7.7%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보다 증가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기업이 중요한 게 이걸 현실적으로 아무리 대기업이 예쁘든 믿든 현실 경제에서 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자체도 중요하고, 또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 고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대기업이 앞에서 다른 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핸드폰 같은면 84%가 외국생산입니다. 현대자동차 65%입니다. 뭐냐 하면 이걸 국내일자리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복지로 바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법인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세를 올린 국가가 없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법인세 올리자고 논쟁하는 국가

가 없다는 얘기고, 올린 국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있는 그리스, 멕시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말씀 올리고. 미국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35%인데 오바마정부에서 28% 인하한다고 그랬고,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15%로 20%P 를 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역대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 박근혜정부 주욱 내려온 추세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유찬 교수님께서 투자할 때 법인세만 결정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내 고용할 때도 중요한 건 기업들이 판단할 때 노동환경이 어떠냐, 규제가 어떠냐. 그다음에 세제가 어떠냐 할 때 세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다. 우리 경쟁이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17%입니다. 중국도 25%로 30%에서 다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김우철 교수님께서 이 건 절대 안 된다. 이거 되면 다 해결된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든지 고용창출, 세액제도를 조정해 나간다는 거.

또 그리고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우리 국민연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현 의원님께서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가업상속제도는 제가 정부에, 중소기업청장 할 때 이 걸 도입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의 88%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유지하려고, 그전에는 상속세가 대개 한 50%였습니다. 아

버지가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면 이 회사 망합니다.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업상속제도를 노무현정부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이연은 대부분 과세이연이 중심입니다. 회사를 정리할 때 상속세를 이렇게 내도록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 윤성식 다음은 박광온 의원님.

○토론자 박광온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최영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니계수와 관련해서 우리 통계청이 산정할 때 자산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자산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지금 이 양극화를 얘기할 수 없죠. 자산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건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현재 의원님, 앞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토론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1%가 아까 법인세 40%라고 했나요? 소득세? 뭐였죠?

○토론자 이현재 상위 1%가 소득세 42%요.

○토론자 박광온 상위 1%, 소득세 42%, 10%가 75% 된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토론자 이현재 ... 따라서.

○토론자 박광온 그거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자면, 2012년에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의 실적이 똑같아요, 45조 원으로. 그런데 2015년에 보면 소득세는 60조 원으로 늘었고, 법인세는 그대로 45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인들이 얼마나 사내유보금을 쌓았습니까? 수백조 원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렸더라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납득이 될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법인세율을 낮춤으로 해서 세수가 확 줄었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세수가 줄어들 거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그만큼 세수를 채워줘야 국가재정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줄이기만 하니까 그게 다 적자가 되고 국가부채가 되고.

또 하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정부분 그걸 메워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담배세입니다. 법인들이 안 낸 거를, 거대법인들이 안 낸 거를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걸 세금을 내서 메워야 되는 이런 현실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우리 김우철 교수님 말씀에서 공감합니다. 법인세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모든 세제들 상속세, 증여세 지금 가업상속제도 그 문제도 사실 1억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3000억인데요, 그것이 정말로 어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건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부를 세금 없이 승계하는, 상속하는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윤성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현 의원님.

○토론자 박주현 예, 아까 이 의원님께서 임대소득 비과세 관련해서 그거를 감면으로 하는 것이

세입자료를 추출하는데 좋지 않으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국세청 국감에서 분명하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3년 이상 전·월세확정일자자료를 계속 다 받아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세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다주택자 중에 92%가 비과세입니다. 이거 너무 비정상적인 상태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40%로 저기를 때리고 있거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의해서 실제 세율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세율이 나오지 않고요.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6.2% 정도를 실제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저축 관련 비과세는 대표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솔림이 가는 그런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험료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나라는 일본에서 일부 하는 거 외에는 어느 나라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옛날에 만들어놓고 미처 없애지 못한 게 아니냐 이거 다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큼니다. 정책금융규모도 너무 커요, 외국에 비해서.

그런데 게다가 미시적인 그 금융상품에까지 다 개입을 해서 ISA니 뭐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책수단으로써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현재 의원님께서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공감하고요. 그 과

세기반을 가장 소득재분배적으로 확대하는 게 비과세감면 정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과세기반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재부 세제실장님께서 이렇게 기업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각 나라마다 다 달라가지고 지금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냐 못 내는 거냐 국제비교를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정치의 실효세율 근거는 나름 합리적인데 기재부의 실효세율 근거는 너무 이상해요. 조세감면이 늘어나면 실효세율이 더 늘어나요. 이상해요. 한번 그거 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갖다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나마 기업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고. 한국은행 계정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기업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난 8년 간이요. 가

계소득 확 줄어들고 정부소득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에 지금 8년간 적자성 채무가 2배반이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세 3조 내지 어떤 사람은 4조, 5조까지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상 부가세 내지는 서민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그런 조세감면 정비하고 법인세 늘리고 하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고 조세형평성에 맞고 또 정부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윤성식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단 1분도 낭비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발제해 주신 두 분 실장님 그리고 세 분 의원님들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발간일 2016년 11월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el 02·2269·9917)

---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8)

---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